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I. 세입·세출결산 총괄

□ 세입결산 총괄

-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조 6,332억 9천7백만원, 징수결정액은 3조 4,801억 8천8백만원이며, 이 중 3조 4,267억 8천9백만원을 수납하고(징수율 98.5%), 522억 6천6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¹⁾은 11억 3천4백만원임.
-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수납액이 2조 8,557억 1천9백만원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전체 세입수납액의 약 83.3%를 차지하고 있음.

<주택정책실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3,633,297	3,480,188	3,426,789	98.5	1,134	52,266
일 반 회 계	555,452	559,911	559,735	99.9	16	160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3,041,073	2,907,489	2,855,719	98.2	-	51,770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	-	-	-	-	-
학 교 용 지 부 담 금 특 별 회 계	36,772	12,788	11,335	88.6	1,118	335

1) “정리보류”란 채납자의 소재파악 곤란이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채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함.

□ 세출결산 총괄

-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4조 3,411억 4천1백만원으로 이 중 3조 5,218억 9천만원을 집행하고, 5,959억 1천5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27억 7천4백만원을 반납한 나머지 집행잔액 2,105억 6천2백만원은 불용하였음(불용률 4.9%). 이는 주택정책실 전년 불용률(11.6%) 대비 6.7%p 낮은 수치이나, 서울특별시 전체 불용률(4.3%)보다 0.6%p 높은 상황임.

<서울특별시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 계	51,490,048	47,460,456	1,690,557	3.3%	100,185	2,238,850	4.3%
일반회계	36,507,392	34,928,473	256,205	0.7%	80,815	1,241,899	3.4%
특별회계	14,982,656	12,531,983	1,434,352	9.6%	19,370	996,951	6.7%

- 회계별 이월은 일반회계 11억 6천8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947억 4천7백만원이고, 불용은 일반회계에서 158억 5천1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703억 2천3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43억 8천6백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주택정책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 계	4,341,141	3,521,890	595,915	12,774	210,562	4.9
일반회계	1,267,799	1,248,762	1,168	2,017	15,851	1.3
주택사업특별회계	3,038,500	2,262,673	594,747	10,757	170,323	5.6
도시개발특별회계	58	56	-	-	2	3.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4,784	10,399	-	-	24,386	70.1

II.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1. 일반회계

□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입결산현액은 총 5,554억 5천2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99억 1천1백만원이며, 이 중 5,597억 3천5백만원을 수납하고(징수율 99.9%), 1억 6천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1천6백만원이 발생하였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일 반 회 계 (합 계)	555,452	559,911	559,735	99.9	16	160
세 외 수 입	73,554	78,072	77,896	99.8	16	160
보 조 금	481,144	481,142	481,142	1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54	696	696	100.0	-	-

- 미수납 사유는 납기미도래(3건, 1억 8백만원), 납세태만(3건, 1천만원), 기타(15건, 4천2백만원)이며, 정리보류 사유는 시효소멸 완성(1천5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임시적 세외수입(32억 6천5백만원) 중 그외수입(1억 1천만원)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 상세내역(세외수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세외수입	73,554	78,072	77,896	99.8	16	160
경상적세외수입	70,269	70,291	70,287	99.9	-	4
공유재산임대료	217	189	186	98.4	-	3
기타사용료	-	43	43	100.0	-	-
배당금수입	70,000	70,000	70,000	100.0	-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0	11	11	100.0	-	-
기타이자수입	42	48	47	97.9	-	1
임시적세외수입	3,265	7,667	7,499	97.8	16	153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3,233	4,925	4,914	99.8	-	11
자체보조금반환수입	-	10	10	100.0	-	-
위탁비반환수입	-	1,227	1,223	99.7	-	4
그외수입	32	1,107	997	90.1	-	110
지난연도수입	-	398	355	89.2	16	2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	115	112	97.4	-	3
과징금	11	88	86	97.7	-	2
기타과태료	9	27	26	96.3	-	1

<일반회계 세입 상세내역(보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보조금	481,144	481,142	481,142	100.0	-	-
국고보조금등	481,144	481,142	481,142	100.0	-	-
국고보조금	481,144	481,142	481,142	100.0	-	-

<일반회계 세입 상세내역(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54	696	696	100.0	-	-
보전수입등	754	696	696	100.0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6	96	96	100.0	-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657	600	600	100.0	-	-

□ 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현액은 1조 2,677억 9천9백만원으로, 이 중 1조 2,487억 6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11억 6천8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0억 1천7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 158억 5천1백만원은 불용하였음(불용률 1.3%).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부 문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응률 (%)
합 계	1,267,799	1,248,762	1,168	2,017	15,851	1.3
사 회 복 지	1,042,369	1,035,482	338	-	6,549	0.6
국 토 및 지 역 개 발	224,356	212,509	830	2,017	8,999	4.0
기 타	1,075	771,630	-	-	303	28.2

가) 이용 : 없음

나) 전용

○ 예산 전용은 총 5건, 3억 2,677만원임.

- 시민아파트 정리 (공공운영비→시설비) 1억 2,500만원
- 역사가옥 사무민간위탁 지원 (민간위탁금→사무관리비) 5,983만원
- 역사가옥 사무민간위탁 지원 (민간위탁금→사무관리비) 1억 28만원
-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활용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공공운영비) 1,865만원
-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활용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공공운영비) 2,300만원

다) 이체 : 없음

라)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은 총 2건, 1억 327만원임.

-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사무관리비) 600만원
→ 소송등 수행(사무관리비)
-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활용 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시설비) 9,727만원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5억 9,873만원임.

-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5억 9,873만원

바)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없음

○ 사고이월은 총 8건, 11억 6,778만원임.

- 시민아파트 정리(시설비) 1억 6,335만원
- 아파트지구 행정절차 이행비용(사무관리비) 1,452만원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전산개발비) 3억 3,781만원
- 의회청사 건립 등 타당성조사 용역(시설비) 4억 6,120만원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재정비사업(시설비) 7,170만원
- 한옥지원센터 운영 및 한옥살이 지원 사업(사무관리비) 3,695만원
- 역사가옥 사무민간위탁 지원(사무관리비) 5,426만원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설비) 2,800만원

○ 계속비이월은 없음.

사) 집행잔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158억 5,144만원이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금 정산잔액	61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000만원
▪ 낙찰차액	1억 3,261만원
▪ 지출잔액	156억 8,822만원

2. 주택사업특별회계

□ 세입결산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조 410억 7천3백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조 9,074억 8천9백만원이며, 이 중 2조 8,557억 1천9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징수율 98.2%), 517억 7천만원을 미수납하였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주택사업특별회계 (합계)	3,041,073	2,907,489	2,855,719	98.2	-	51,770
세외수입	536,673	690,380	638,610	92.5	-	51,770
보조금	797,462	604,496	604,496	100.0	-	-
지방채	395,000	395,000	395,000	1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11,938	1,217,613	1,217,613	100.0	-	-

- 미수납 사유는 무재산(323억 3천9백만원), 납세태만(126억 1천만원), 기타(68억 2천1백만원)²⁾임.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2) 매각사업수입의 경우 10년 또는 분납 납부 계약이 다수임에 따라 미수납액은 필연적으로 발생함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상세내역(세외수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세외수입	536,673	690,380	638,610	92.5	-	51,770
경상적세외수입	485,701	540,077	511,427	94.7	-	28,650
공유재산임대료	360,552	461,731	461,644	99.9	-	87
청산금수입	1,490	22	22	100.0	-	-
매각사업수입	119,474	68,068	39,505	58.0	-	28,563
공공예금이자수입	3,216	9,094	9,094	100.0	-	-
융자금회수이자수입	363	339	339	100.0	-	-
기타이자수입	607	823	823	100.0	-	-
임시적세외수입	46,876	149,735	126,809	84.7	-	22,926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551	21,729	21,729	100.0	-	19,178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2,839	4,484	4,484	100.0	-	1,645
위탁비반환수입	2,832	20,212	20,212	100.0	-	-
그외수입	21,496	74,957	74,957	100.0	-	-
지난연도수입	17,159	28,354	5,428	19.1	-	22,92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095	568	374	65.8	-	194
변상금	671	546	354	64.8	-	192
부담금	3,425	22	20	89.7	-	2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상세내역(보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보조금	797,462	604,496	604,496	100.0	-	-
국고보조금등	797,462	604,496	604,496	100.0	-	-
국고보조금	6,420	4,120	4,120	100.0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833	13,721	13,721	100.0	-	-
기금	777,209	586,655	586,655	100.0	-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상세내역(지방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지방채	395,000	395,000	395,000	100.0	-	-
국내차입금	395,000	395,000	395,000	100.0	-	-
모집공채	395,000	395,000	395,000	100.0	-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상세내역(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11,938	1,217,613	1,217,613	100.0	-	-
보전수입등	506,582	494,976	494,976	100.0	-	-
순세계잉여금	444,198	431,537	431,537	100.0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11	611	611	100.0	-	-
전년도이월사업비	43,342	43,342	43,342	100.0	-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6,403	17,455	17,455	100.0	-	-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7	2,032	2,032	100.0	-	-
내부거래	805,357	722,637	722,637	100.0	-	-
기타회계전입금	480,529	467,866	467,866	100.0	-	-
예수금수입	295,600	225,600	225,600	100.0	-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0,500	20,500	20,500	100.0	-	-
예탁금이자수입	8,728	8,671	8,671	100.0	-	-

□ **세출결산**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조 385억원으로, 이 중 2조 2,626억 7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5,947억 4천7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07억 5천7백만원을 반납한 나머지 집행잔액 1,703억 2천3백만원은 불용하였음(불용률 5.6%).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부 문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응률 (%)
합 계	3,038,500	2,262,673	594,747	10,757	170,323	5.6
사 회 복 지	2,782,007	2,018,894	592,262	10,756	160,096	5.8
국 토 및 지 역 개 발	252,907	240,591	2,485	1	9,829	3.9
기 타	3,586	3,188	-	-	399	11.1

가) 이용 : 없음

나) 전용 : 없음

다) 이체 : 없음

라)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은 총 9건, 3억 9천만원임.

- 청년 월세 지원 5,0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2,090만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민간위탁금)
-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3,500만원
(시설비→감리비)
-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사무관리비) 800만원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사무관리비)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등(사무관리비) 1,200만원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사무관리비)
-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 1억 3,0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시설비)
- 추진위/조합 공공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3,796만원
→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사무관리비) 650만원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사무관리비)
- 인력운영비(보수) 9,000만원
→ 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

○ 명시이월은 총 11건, 5,906억 7천8백만원임.

▪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공사·공단자본전출금)	1,888억	200만원
▪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출자금)	1,220억	1,000만원
▪ 청년 매입임대 사업(공사·공단자본전출금)	796억	9,500만원
▪ 청년 매입임대 사업(출자금)	350억	원
▪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공사·공단자본전출금)	517억	2,300만원
▪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출자금)	558억	6,000만원
▪ 공공원룸주택 매입임대 사업(공사·공단자본전출금)	83억	2,950만원
▪ 공공원룸주택 매입임대 사업(출자금)	51억	4,500만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100억	원
▪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54억	7,273만원
▪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6억	4,100만원

○ 사고이월은 총 24건, 40억 6천9백만원임.

▪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시설비)	1억	1,680만원
▪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시설비)	2억	4,915만원
▪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시설비)	1억	500만원

▪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사무관리비)	3,752만원
▪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사무관리비)	1,601만원
▪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사무관리비)	3,393만원
▪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시설비)	1억 9,450만원
▪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사무관리비)	1,035만원
▪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사무관리비)	6억 7,500만원
▪ 서울시 주택시장 동향 조사 및 분석(사무관리비)	2,665만원
▪ 서울시 주거안전 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연구용역비)	1억 4,697만원
▪ 전월세 물량예측 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무관리비)	9,510만원
▪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시설비)	4,925만원
▪ 도림천 제2지류 하천조성공사(시설비)	8,686만원
▪ 주거재생사업 관리(시설비)	1,891만원
▪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사무관리비)	2,675만원
▪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비)	11억 6,758만원
▪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비)	2,673만원
▪ 안심 집수리사업 활성화(사무관리비)	1억 4,104만원
▪ 안심 집수리사업 활성화(시설비)	562만원
▪ 경북궁 서측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사무관리비)	1억 1,899만원
▪ 경북궁 서측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시설비)	3억 929만원
▪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시설비)	5,589만원
▪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시설비)	3억 5,500만원

○ 계속비이월은 없음.

사) 집행잔액

○ 주택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703억 2천3백만원(불용률 5.6%)이며, 발생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금 정산잔액	139억	3,123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96억	897만원
▪ 낙찰차액	2억	396만원
▪ 지출잔액	951억	4,859만원
▪ 예비비	14억	3,051만원

3. 도시개발특별회계

□ 세입결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없음.

□ 세출결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천8백만원으로 이 중 5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백만원은 불용하였음(불용률 3.4%).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부 문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 계	58	56	-	-	2	3.4
국 토 및 지 역 개 발	58	56	-	-	2	3.4

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세입결산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67억 7천2백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27억 8천8백만원이며, 이 중 113억 3천5백만원을 수납하였음(징수율 88.6%). 정리보류액은 11억 1천8백만원이며, 3억 3천5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정리보류 사유는 체납처분 중지(11억 1천8백만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납기일 체납에 따른 가산금 미납(3억 3천5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됨.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학 교 용 지 부 담 금 계 (특 별 회 계 합 계)	36,772	12,788	11,335	88.6	1,118	335
세 외 수 입	28,910	5,171	3,718	71.9	1,118	33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861	7,617	7,617	100.0	-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상세내역(세외수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세외수입	28,910	5,171	3,718	71.9	1,118	335
경상적세외수입	283	208	208	100.0	-	-
징수교부금수입	-	84	84	100.0	-	-
공공예금이자수입	283	125	125	100.0	-	-
임시적세외수입	5,907	1,434	-19	-1.3	1,118	335
지난연도수입	5,907	1,434	-19	-1.3	1,118	33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720	3,529	3,529	100.0	-	-
부담금	22,720	3,529	3,529	100.0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상세내역(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861	7,617	7,617	100.0	-	-
보전수입등	7,385	7,385	7,385	100.0	-	-
순세계잉여금	7,385	7,385	7,385	100.0	-	-
내부거래	476	232	232	100.0	-	-
예탁금이자수입	476	232	232	100.0	-	-

□ 세출결산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7억 8천4백만원으로, 이 중 103억 9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43억 8천6백만원은 불용하였음(불용률 70.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부 문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 계	34,784	10,399	-	-	24,386	70.1
국 토 및 지 역 개 발	34,784	10,399	-	-	24,386	70.1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오정균)

1. 세입결산 총괄

-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산한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3조 6,332억 9천7백만원, 징수결정액 3조 4,801억 8천8백만원, 실제수납액 3조 4,267억 8천9백만원으로, 징수결정

액 대비 98.5%를 수납하였음. 정리보류액은 11억3천4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22억 6천6백만원임.

<주택정책실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3,633,297	3,480,188	3,426,789	98.5	1,134	52,266
일반회계	555,452	559,911	559,735	99.9	16	160
주택사업특별회계	3,041,073	2,907,489	2,855,719	98.2	-	51,770
도시개발특별회계	-	-	-	-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6,772	12,788	11,335	88.6	1,118	335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5,554억 5천2백만원, 징수결정액은 5,599억 1천1백만원, 실제수납액은 5,597억 3천5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9.9%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합계)	555,452	559,911	559,735	99.9	16	160
세외수입	73,554	78,072	77,896	99.8	16	160
보조금	481,144	481,142	481,142	1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54	696	696	100.0	-	-

- 정리보류액은 1천6백만원으로 사유는 시효소멸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 6천만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납기미도래(1억 8백만원), 납세태만(1천만원), 기타(4천만원) 등의 사유로 파악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은 주로 국고보조금(4,811억 4천2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4년간 수납비율은 99.9%로 집계됨.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과목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정리 보류액	미수 납액	징수결정액과부족 및 미수납 사유 (※ □ 는 세부사업내역)
세 입 총 계	555,452	559,911	559,765	16	160	
세 외 수 입	73,554	78,072	77,896	15,521	160	
경 상 적 세 외 수 입	70,269	70,291	70,287	-	4	
재 산 임 대 수 입	217	189	186	-	3	
공 유 재 산 임 대 료	217	189	186	-	3	공공한옥 사용료 체납
사 용 료 수 입	-	43	43	-	-	
기 타 사 용 료	-	43	43	-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대관 수입 발생
사 업 수 입	70,000	70,000	70,000	-	-	
배 당 금 수 입	70,000	70,000	70,000	-	-	
이 자 수 입						
융 자 금 회 수 이 자 수 입	10	11	11	-	-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금 이자수입 초과 발생
기 타 이 자 수 입	42	48	47	-	1	자치구 보조사업 이자수입 미납 등
임 시 적 세 외 수 입	3,265	7,667	7,498	16	153	
보 조 금 반 환 수 입	3,233	6,161	6,146	-	15	
시 · 도 비 보 조 금 반 환 수 입	3,233	4,925	4,914	-	11	자치구 보조사업 잔액 반환 지연
자 체 보 조 금 반 환 수 입	-	10	10	-	-	희망의 집수리사업, 건축문화활성화 공모사업 등 보조금 잔액 발생
위 탁 비 반 환 수 입	-	1,227	1,223	-	4	민간위탁 정산 반환금 체납 발생
기 타 수 입	32	1,107	997	-	110	
그 외 수 입	32	1,107	997	-	110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보조금 잔액 납기 미도래
지 난 년 도 수 입	-	398	355	16	28	
지 난 년 도 수 입	-	398	355	16	28	과년도 과징금 등 체납
지 방 행 정 제 제 금 과	20	115	111	-	3	
과 징 금	11	88	86	-	2	
과 징 금	11	88	86	-	2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과징금 납기 미도래
과 태 료	9	27	26	-	1	
기 타 과 태 료	9	27	26	-	1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보 조 금	481,144	481,142	481,142	-	-	
국 고 보 조 금 등	481,144	481,142	481,142	-	-	

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과부족 및 미수납 사유 (※ □ 는 세부사업내역)
	국고보조금등	481,144	481,142	481,142	-	-	
	국고보조금	481,144	481,142	481,142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54	696	696	-	-	
	보 전 수 입 등	754	696	696	-	-	
	전 년 도 이 월 금	96	96	96	-	-	
	국고보조금사 용 잔 액	96	96	96	-	-	
	용자금원금수입	657	600	600	-	-	
	민간용자금회 수 수 입	657	600	600	-	-	

- 일반회계 미수납액 1억 6천만원 중 1억 1천만원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2022년 시행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과 관련, SH공사로부터 제출된 정산보고서를 검토하는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³⁾(’23.6.)되고, 이로 인해 회계검증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보조금 잔액 납기시점이 순연되었기 때문임.

<최근 4년간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	실제수납액			
2023	555,452	559,911	559,735	-	559,735	99.9	16	160
2022	504,691	508,370	508,001	23	507,978	99.9	-	391
2021	395,253	450,382	450,214	-	450,214	99.9	12	156
2020	319,260 (34)	317,762 (61)	317,511 (61)	40 (-)	317,472 (61)	99.9 (100)	- (-)	290 (-)

※ 2020년은 종전의 주택건축본부를 기준으로 표기함. 도시공간개선단은 괄호에 별도표기.

3) 종전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받도록 하던 것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받도록 제12조제2가 개정되었음.

○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수납 총액	환급액 (-)	실제 수납액			
주택정책실	555,452	559,911	559,735	0	559,735		16	160
주택정책과	553,180	556,556	556,440	-	556,440		-	116
전략주택공급과	-	3	3	-	3		-	-
공공주택과	37	49	49	-	49		-	-
공동주택지원과	189	88	73	-	73		11	5
주거정비과	-	-	0	-	0		-	-
주택정책지원센터	-	0	0	-	0		-	-
건축기획과	90	397	372	-	372		-	0
주거환경개선과	3	5	3	-	3		-	2
지역건축안전센터	1,117	1,059	1,059	-	1,059		-	0
한옥정책과	870	1,797	1,780	-	1,780		5	12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3조 410억 7천3백만원, 징수결정액은 2조 9,074억 8천9백만원, 실제수납액은 2조 8,557억 1천9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8.2%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주택사업특별회계 (합계)	3,041,073	2,907,489	2,855,719	98.2	-	51,770
세 외 수 입	536,673	690,380	638,610	92.5	-	51,770
보 조 금	797,462	604,496	604,496	100.0	-	-
지 방 채	395,000	395,000	395,000	1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11,938	1,217,613	1,217,613	100.0	-	-

- 미수납액은 517억 7천만원이며, 사유는 무재산(323억 3,915만원), 납세태만(126억 1,006만원), 기타(68억 2,090만원)⁴⁾ 임.

<최근 4년간 주택정책실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 총액	환급액 (-)	실제 수납액			
2023	2,997,732	2,907,489	2,855,739	20	2,855,179	-	-	51,770
2022	3,002,632	2,981,465	2,954,364	1,075	2,953,290	99.1	-	28,175
2021	2,732,164	2,800,114	2,774,016	118	2,773,898	99.1	-	26,216
2020	3,034,017	3,168,631	3,120,442	77	3,120,365	98.5	-	48,266

※ 2020년은 종전의 주택건축본부를 기준으로 표기함.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과부족 및 미수납 사유 (※ □ 는 세부사업내역)
세입총계	3,041,073	2,907,489	2,855,719	-	51,770	
세외수입	536,673	690,380	638,610	-	51,770	
경상적세외수입	485,701	540,077	511,427	-	28,650	
재산임대수입	360,552	461,731	461,644	-	87	
공유재산임대료	360,552	461,731	461,644	-	87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 증가에 따른 임대료 수입 초과 징수 및 미납액 발생
사업수입	120,964	68,090	39,527	-	28,563	
청산금수입	1,490	22	22	-	-	자치구 징수계획 대비 환지청산 감소
매각사업수입	119,474	68,068	39,505	-	28,563	최근 5년간 결산 평균액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매각 감소
이자수입	4,186	10,256	10,256	-	-	
공공예금이자수입	3,216	9,094	9,094	-	-	당초 예상보다 공공예금 잔액 등이 증가하여 이자수입 증가
융자금회수이자수입	363	339	339	-	-	융자 실행 후 준공인가 전까지 기한연장 가능하여 정확한 이자금액 예측 불가
기타이자수입	607	823	823	-	-	사회주택 토지임대료 지원 등 대행사업 이자 초과 발생

4)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대금 수입은 10년 또는 분납납부 계약이 다수이며, 최초계약자의 사망 또는 매매로 인한 납부자 변동 시 징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납부자 고령화에 따른 능력상실로 체납액이 발생하게 됨.

과목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정리 보류액	미수 납액	징수결정액과부족 및 미수납 사유 (* □ 는 세부사업내역)
임시적세외수입	46,876	149,735	126,809	-	22,926	
재산매각수입	2,551	21,729	21,729	-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551	21,729	21,729	-	-	학교용지 매각계약 변경 (20년 분납 → 잔금 전액납부)
보조금반환수입	5,671	24,695	24,695	-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2,839	4,484	4,484	-	-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초과 발생
위탁비반환수입	2,832	20,212	20,212	-	-	주거복지센터 등 위탁사업 집행잔액 초과 발생
기타수입	21,496	74,957	74,957	-	-	
그외수입	21,496	74,957	74,957	-	-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 공사 취소로 인한 위탁사업비 정산 환수 등
지난년도수입	17,159	28,354	5,428	-	22,926	
지난년도수입	17,159	28,354	5,428	-	22,926	당초 예측보다 매각대금 및 변상금 체납 징수 증가
지방행정제제과	4,095	568	374	-	194	
변상금	671	546	354	-	192	
변상금	671	546	354	-	192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당초 예산 대비 감소
부담금	3,425	22	20	-	2	
부담금	3,425	22	20	-	2	건설경기 악화 등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 연기
보조금	797,462	604,496	604,496	-	-	
국고보조금등	797,462	604,496	604,496	-	-	
국고보조금등	797,462	604,496	604,496	-	-	
국고보조금	6,420	4,120	4,120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833	13,721	13,721	-	-	신월3동 도시재생사업 구조조정 (사업 축소)에 따른 예산 미교부
기금	777,209	586,655	586,655	-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 목표 대비 실적 부진에 따른 기금 보조금 미수령 등
지방채	395,000	395,000	395,000	-	-	
국내차입금	395,000	395,000	395,000	-	-	
지방채증권	395,000	395,000	395,000	-	-	
모집공채	395,000	395,000	395,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11,938	1,217,613	1,217,613	-	-	
보전수입등	506,582	494,976	494,976	-	-	
잉여금	444,198	431,537	431,537	-	-	
순세계잉여금	444,198	431,537	431,537	-	-	재측계정 잉여금 결손액 발생
전년도이월금	43,952	43,952	43,952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11	611	611	-	-	
전년도이월사업비	43,342	43,342	43,342	-	-	
용자금원금	16,403	17,455	17,455	-	-	

과목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정리 보류액	미수 납액	징수결정액과부족 및 미수납 사유 (* □ 는 세부사업내역)
회 수 수 입	민간융자 회 수 수 입	16,403	17,455	17,455	-	-	용자 실행 후 준공인가 전까지 기한연장 가능하여 정확한 반납금액 예측 불가
	보 조 금 등 반 환 금	2,027	2,032	2,032	-	-	
	국고보조금 등 반 환 금	2,027	2,032	2,032	-	-	전세임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예측 대비 초과 발생
내 부 거 래		805,357	722,637	722,637	-	-	
전 입 금	기 타 회 계 전 입 금	480,529	467,866	467,866	-	-	재산세 도시지역분 예측 대비 과소 징수
	예 탁 금 및 예 수 금	324,828	254,771	254,771	-	-	
	예수금수입	295,600	225,600	225,600	-	-	국민계정 세출 감소에 따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삭감
	예탁금원금 회 수 수 입	20,500	20,500	20,500	-	-	-
	예 탁 금 이 자 수 입	8,728	8,671	8,671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자수입 예측 대비 과소 발생

○ 미수납액과 관련,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55.3%)과 임시적세외 수입(44.3%)이 세입결산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286억 5천만원) 중 99%는 ‘매각사업 수입’(285억 6천3백만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매각사업 수입’은 정비구역 내 시유재산 토지를 사업시행자(조합 등)에게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으로 `23년 예산편성 당시 최근 5년간의 결산 평균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둔화되면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229억 2천6백만원)은 전액 ‘지난년도 수입’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난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80.9% 규모가 미수납된 것은 당초 예측보다 매각대금 및 변상금 체납 징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2022회계연도 결산(미수납액 281억 7천5백만원) 당시에도 적극적인 징수를 위한 압류조치 등을 통해 결손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는 바, 집행기관은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부서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부서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	실제수납액			
주택정책실	3,077,845	2,920,277	2,875,829	8,775	2,867,054	98.2	-	52,105
주택정책과	1,590,496	1,429,017	1,429,020	2	1,429,017	100.0	-	-
주거정비과	1,229,823	1,222,992	1,171,240	18	1,171,222	95.8	-	51,770
재정비축진사업과	220,754	255,480	255,480	-	255,480	100.0	-	-

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부서별 학교용지특별회계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율 (%)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	실제수납액			
주택정책실	36,772	12,788	20,089	8,754	11,335	88.6	1,118	335
공동주택지원과	36,772	12,788	20,089	8,754	11,335	88.6	1,118	335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367억 7천2백만원, 징수결정액은 127억 8천8백만원, 실제수납액은 113억 3천5백만원으로 징수율은 88.6%이며, 이중 미수납액은 3억 3천5백만원으로, 사유는 납기일 체납에 따른 가산금 미납 및 시효완성 정리(3억 3천5백만원)임.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87억 5천4백만원)은 부담금을 잘못 부과하여 발생한 5건의 소송⁵⁾에서 패소한 데 따른 것으로, 착오에 의한 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패소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과목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정리 보류액	미수 납액	징수결정액과부족 및 미수납 사유 (※ □ 는 세부사업내역)
세 입 총 계	36,772	12,788	11,335	1,118	335	
세 외 수 입	28,910	5,171	3,718	1,118	335	
경 상 적 세 외 수 입	283	208	208	-	-	
징 수 교 부 금 수 입	-	84	84	-	-	
징 수 교 부 금 수 입	-	84	84	-	-	소송 결과에 따른 반납금 세입 조치
이 자 수 입	283	125	125	-	-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283	125	125	-	-	'23년도 학교용지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발생분 세입조치
임 시 적 세 외 수 입	5,907	1,434	△19	1,118	335	
지 난 년 도 수 입	5,907	1,434	△19	1,118	335	
지 난 년 도 수 입	5,907	1,434	△19	1,118	335	학교용지부담금 기 징수분 이월금으로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수납액 편차 발생
지 방 행 정 제 제 금	22,720	3,529	3,529	-	-	
부 담 금	22,720	3,529	3,529	-	-	
부 담 금	22,720	3,529	3,529	-	-	기 수납분 환급소송 패소 등에 따른 반납분 발생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7,861	7,617	7,617	-	-	
보 전 수 입 등	7,385	7,385	7,385	-	-	
잉 여 금	7,385	7,385	7,385	-	-	
순 잉 여 금	7,385	7,385	7,385	-	-	
내 부 거 래	476	232	232	-	-	
예 탁 금 및 예	476	232	232	-	-	
예 탁 금 이 자 수 입	476	232	232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수입 이자 과소 발생

5) 부과가구수 산정시 기존가구수 포함 부과(2건), 3년 이상 취학인구 감소로 신설수요가 없음에도 부담금 부과(2건), 조합원(기존 가구수에 해당) 처분 분양에 대한 부과(1건)에 대한 소송임.

2. 세출결산 총괄

-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산한 전체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조 3,411억 4천1백만원, 지출액 3조 5,218억 9천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5,959억 1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127억 7천4백만원으로, 집행잔액 2,105억 6천2백만원은 불용처리됨(불용률 4.9%).

<주택정책실 회계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 계	4,341,141	3,521,890	595,915	12,744	210,562	4.9
일 반 회 계	1,267,799	1,248,762	1,168	2,017	2,127	0.2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3,038,500	2,262,673	594,747	10,757	170,323	5.6
학 교 용 지 부 담 금 특 별 회 계	34,784	10,399	-	-	24,386	70.1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58	56	-	-	2	3.4

가) 일반회계 세출결산

- 일반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1조 2,677억 9천9백만원으로, 이 중 1조 2,487억 6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11억 6천8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0억 1천7백만원을 반납 후 발생한 집행잔액 158억 5천1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불용률 1.3%).

<주택정책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부 문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 계	1,267,799	1,248,762	1,168	2,017	15,851	1.3
사 회 복 지	1,042,369	1,035,482	338	-	6,549	0.6
국 토 및 지 역 개 발	224,356	212,509	830	2,017	8,999	4.0
기 타	1,075	772	-	-	303	28.1

- 최근 5년간 일반회계의 불용률은,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23년 불용률은 전년대비 1.1%p 높아진 1.3%임.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2023	1,267,799	1,249,945	1,248,762	1,168	2,017	15,851	1.3
2022	1,353,936	1,348,402	1,347,204	4,508	96	2,127	0.2
2021	997,992	992,826	992,040	1,039	944	3,969	0.4
2020	813,368	797,531	797,350	181	4,893	10,944	1.3
2019	885,779	829,482	827,751	2,245	6,856	48,928	5.5

※ 2020년 이전은 종전의 주택건축본부, 주택건축국을 기준으로 표기함.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조 385억원으로, 이 중 2조 2,626억 7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5,947억 4천7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07억 5천7백만원을 반납한 나머지 집행잔액 1,703억 2천 3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불용률 5.6%).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부 문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합 계	3,038,500	2,262,673	594,747	10,757	170,323	5.6
일 반 공 공 행 정	1	1	-	-	0	0.0
사 회 복 지	2,782,007	2,018,864	592,262	10,756	160,096	5.8
국 토 및 지 역 개 발	252,907	240,591	2,485	1	9,829	3.9
기 타	3,586	3,187	-	-	399	11.1

- 최근 5년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불용률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3년 불용률은 전년대비 10.4%p 낮아진 5.6%(불용액 1,703억 2천3백만원)이나, 과년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최근 5년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2023	3,038,500	2,266,736	2,262,673	594,747	10,757	170,323	5.6
2022	2,993,925	2,476,424	2,469,734	43,342	611	480,239	16.0
2021	2,543,571	2,395,712	2,393,604	2,191	-	147,776	5.8
2020	2,777,259	2,715,651	2,713,819	5,943	186	57,311	2.1
2019	2,021,432	1,978,521	1,977,765	2,090	5,871	35,705	1.7

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천8백만원으로 이 중 5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률은 3.4%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부 문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합 계	58	56	-	-	2	3.4
국 토 및 지 역 개 발	58	56	-	-	2	3.4

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결산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7억 8천4백만원으로 이 중 103억 9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43억 8천6백만원을 불용 처리 하였는데(불용률70.1%), 이는 당초 세입 예상(367억 7천2백만원)을 토대로 통합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한 33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113억 3천5백만원만 실수납되어 예탁규모를 97억원으로 축소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는 바, 향후 당해연도의 세입규모를 파악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부 문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합 계	34,784	10,399	-	-	24,386	70.1
국 토 및 지 역 개 발	34,784	10,399	-	-	24,386	70.1

3. 세출예산 집행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결과

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총 5건, 3억 2천7백만원이며, 모두 일반회계에서 발생 하였음.

<예산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	공동주택지 원 과	시민아파트 정리	공공운영비	127	125	-	- 노후 시민아파트 정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조기 시행
		시민아파트 정리	시설비	40	-	125	
일반	한옥정책과	역사가옥 사무민간위탁 지원	민간위탁금	615	60	-	- 홍건익가옥 사무민간 위탁 협약해지에 따라 단기운영 용역 추진
		역사가옥 사무민간위탁 지원	사무관리비	3	-	60	
일반	한옥정책과	역사가옥 사무민간위탁 지원	민간위탁금	555	100	-	- 홍건익가옥 사무민간 위탁 협약해지에 따라 단기운영 용역 추진
		역사가옥 사무민간위탁 지원	사무관리비	63	-	100	
일반	한옥정책과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활용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81	23	-	- 서울한옥 4.0 재창조 관련 공공한옥 글로벌 라운지 조성 추진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활용사업	시설비	-	-	23	
일반	한옥정책과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활용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	19	-	- 서울한옥 4.0 재창조 관련 공공한옥 글로벌 라운지 조성 추진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활용사업	공공운영비	30	-	19	

○ ‘시민아파트 정리’는 1970년대 준공되어 2004년도 안전등급 D급 판정을 받은 중구 회현동 147-23번지 일대의 회현제2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⁶⁾을 추진하고자 공공운영비 1억 2천5백 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음.

- 이는 당초 계획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 및 도시경관 회복을 위하여 시민아파트정리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택정책실 현안관

6) ‘회현제2시민아파트 부지 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련 시장 보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안을 바탕으로 잔여세대에 대한 보상·이주 협의 및 관련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용역 준공 이후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정리절차 등 수정된 로드맵을 신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겠음⁷⁾.

- ‘홍건익가옥 사무민간위탁 협약해지’는 종로구 경복궁 서측(필운대로 1길 14-4)에 위치한 공공한옥인 홍건익가옥(시 민속문화재 제33호)의 민간위탁 협약이 당초 만료기한 전인 '23년 8월 31일 해지⁸⁾됨에 따라, 재위탁⁹⁾ 전까지 단기운영 용역을 위해 민간위탁금 6억 1천5백만원 중 교부잔액¹⁰⁾에 해당하는 6천만원과 정산반납액¹¹⁾ 1억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 예산의 이체는 없음

▶ 예산의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은 11건, 총 4억 9천4백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 2건, 1억 3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9건, 3억 9천만원임.

7) 이와 관련하여, 최근('24.6.13.) 서울시는 '26년 착공을 목표로 회현제2시민아파트를 시민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시작함.



8) 2022회계연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당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금 전용 계획에서 '22년 2회에 걸쳐 총 1억 2,111만 6,946원이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인출(목적 외 사용)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임.

9) '24.1.1.부터 오픈하우스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됨.

10) 홍건익가옥 민간위탁금 총액 중 조기 협약해지에 따라 남은 잔액

11) 기 교부된 민간위탁금 중 집행 정산후 반납 예정인 금액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사 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일반	공동주택지 원 과	층간소음 예방 및 관 리 지원	사무관리비	117	6	-	-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사업 설계용역 입찰관련 소송수행 비용 확보
		소송등 수행	사무관리비	-	-	6	
일반	한옥정책과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활용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	97	-	- 서울한옥 4.0 재창조 관련 공공한옥 글로벌 라운지 조성 추진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활용사업	시설비	23	-	97	
특별	주택정책과	재개발 임대주택 위 탁관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6,827	21	-	- 민간위탁 재개발임대 주택 화재 발생에 따른 할증보험료 납부
		재개발 임대주택 위 탁관리	민간위탁금	921	-	21	
특별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호)	시설비	1,106	35	-	- 신봉터널 상부 공공주택 건립사업 중단에 따른 감리비 예산 확보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호)	감리비	115	-	35	
특별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호)	사무관리비	10	8	-	- 장기전세주택 수기공모 추진에 따른 홍보예산 확보
		지역주택조합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	사무관리비	76	-	8	
특별	공공주택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12	12	-	- 장기전세주택 수기공모 추진에 따른 홍보예산 확보
		지역주택조합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	사무관리비	64	-	12	
특별	주택정책과	청년 월세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64,000	50	-	- 하반기 추가 모집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센터 대행사업비 증액
		청년 월세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23	-	50	
특별	공동주택지 원 과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81	130	-	- 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사용 (공기관→민간)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시설비	-	-	130	
특별	주거정비과	추진위/조합 공공 지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10	38	-	-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보조금 부족분 확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74	-	38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사 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특별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사무관리비	409	7	-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운용비용 확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무관리비	-	-	7	
특별	주거정비과	인력운영비	보수	2,365	90	-	- 주거정비과 인력운영비 부족분 확보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240	-	90	

-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은 ‘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사업¹²⁾의 시행을 담당하던 SH와 LH가 ‘23년에 참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민간전문가¹³⁾를 활용하기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3천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음.
-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7개 대상지의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였으나, 그 중 단 5개소¹⁴⁾만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사비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투입함과 동시에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법령상 각종 규제완화 적용방안 및 단독·통합개발에 따른 분담금을 제시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¹⁵⁾.

12)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행정2부시장방침 제109호, '21.6.4)에 따라 초기단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분석 비용’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13) 엔지니어링업체(도시계획)+건축사사무소

14) '23년 10월 기준, 조합설립 3개소, 건축심의 1개소, 사업시행인가 1개소(※전체 98개소 추진 중)

15) 최근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금년의 경우 신청을 통해 15개 대상지를 선정한 후 대상지별 건축계획(안) 제시 및 추정 분담금 산출을 제공할 예정임(붙임3.. 참고)

- 한편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의 사무관리비 8백만원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등’의 사무관리비 1천 2백만원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 사무관리비로 각각 변경하였음.
- 이는 2007년 공공주택을 저소득 시민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공급하고, 고품질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 임대차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16주년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수기공모전을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나)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1건, 5억 9천9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과 관련, 국고보조금이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 비용을 지출한 것임.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과목		지출결정액	결정일자	사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일반회계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99	'23. 12. 18.	-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분 확보

-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주거약자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급여법」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호-309호)¹⁶⁾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47%이하 임차 및 자가거주에 대해 가구당 기준임대료(최대지원액)를

16) 현재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78호, 2023.8.17.)에 따름

상한으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의 비율로 집행되는데, '23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내시를 변경¹⁷⁾함에 따라 일부 자치구에서 국고 증액을 요청하게 되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임.

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

▶ 명시이월

- 작년말 의회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없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1건, 총 5,906억 7천8백만원임.

<작년 말 의회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된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회계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내용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명시이월사유	추진현황 ('24.6.기준)
명시이월 합계						590,678,225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계					941,192,605	590,678,225		
특별	주택정책과	일반(다가구)매입임대주택사업	반지하주택을 매입 또는 철거 후 신축 매입하여 반지하는 커뮤니티 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공사공단자 본대출금 (40401)	272,340,000	188,802,000	2023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목표 대비 실적 부진에 따라 일부 예산 차년도 이월하여 계속 추진	-398호 매입 (반지하 191) -1차 공고 (4.23) 후 상시 접수 중
				출자금 (50201)	174,300,000	122,010,000		
특별	주택정책과	청년매입임대사업	반지하주택을 매입 또는 철거 후 신축 매입하여 반지하는 커뮤니티 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공사공단자 본대출금 (40401)	113,850,000	79,695,000	2023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목표 대비 실적 부진에 따라 일부 예산 차년도 이월하여 계속 추진	-14호 매입 -1차 공고 (4.23) 후 4,002호 접수
				출자금 (50201)	50,000,000	35,000,000		

17)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3433(변경 내시 통보, '23.9.7.)

회계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내용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명시이월사유	추진현황 (’24.6.기준)
특별	주택정책과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반지하주택을 매입 또는 철거 후 신축 매입하여 반지하는 커뮤니티 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공사공단자 본대출금 (40401)	78,750,000	51,723,000	2023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목표 대비 실적 부진에 따라 일부 예 산 차년도 이월하여 계속 추진	-1차 공고 (4.23) 후 653호 접수
				출자금 (50201)	79,800,000	55,860,000		
특별	주택정책과	공공원룸주택 매입임대 사업	반지하주택을 매입 또는 철거 후 신축 매입하여 반지하는 커 뮤니티 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지상층은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	공사공단자 본대출금 (40401)	12,015,000	8,329,500	2023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목표 대비 실적 부진에 따라 일부 예산 차년도 이월하여 계속 추진	-1차 공고 (4.23) 후 상시 접수 중
				출자금 (50201)	7,350,000	5,145,000		
특별	주택정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취약 계층 청년의 주거수 준 향상을 위한 월세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보증 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 1인 최대 20만원 × 12개 월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재원) (30101)	21,400,000	10,000,000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선정자 지원금 계속 지 급을 위해 차년도 이월 (지급기간: ~’24. 12.)	사업 선정자 매월 지원금 지급 중 (95억원 집행완료)
특별	공공주택과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최대 30%, 6천만원한도)를 무이자 로 지원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40302)	90,945,450	25,472,725	2023년 장기안심주택 입주대 상자 모집 일정 순연에 따른 공급목표 미달로 불용액 이월 하여 계속 추진	5월말 현재 799호 공급 (정상 추진)
특별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 주택)	장기차고지 복합화사업 저이 용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무주 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고 품질 공공주택 공급 및 지역사 회에 필요한 생활SOC 공급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40302)	40,442,155	8,641,000	사업계획 승인 중인 사업으로 본공사 착공 전 조성비, 설계 용역비 등 지급을 위해 차년 도 이월	’24.5월 통합 심의 / , ’24.12월 사 업계획 승인 예정

▶ 사고이월

- 사고이월 사업은 32건, 총 52억 3천7백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 8건, 총 11억 6천8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4건, 총 40억 6천9백만원으로, 대부분 용역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임.

<사고이월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률 (%)	계약일	사업종료일		사고이월사유	현황 (`24.6.)
							당초	변경		
합계			20,348	5,237	25.7					
일반회계 (8건) 소계			3,185	1,168	36.7					
일반	시민아파트 정리	시설비	165	163	99.0	'23.12.	'24.10.	-	회현시민아파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10월)	미준공
	아파트지구 행정절차 이행비용	사무 관리비	30	15	48.4	'23.01.	'23.12.	'24.03.	5개 아파트지구 심의절차 지연에 따라 공고비용 차년도 이월(2024년 상반기 집행)	공고 완료
	서울 건축주택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전산 개발비	955	338	35.4	'23.01.	'24.05.	-	서울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 및 감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5월)	준공
	의회청사 건립 등 타당성조사 용역	시설비	680	461	67.8	'23.05.	'24.03.	'24.04.	시의회청사 건립 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3월)	준공
						'23.12.	'24.04.	'24.06.	시의회본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리모델링 및 연계활용 기본구상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6월)	미준공
						'23.12.	'24.04.	'24.06.	시의회 의원회관 공간 재구조화 기본구상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6월)	미준공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재정비사업	시설비	375	72	19.1	'23.05.	'24.02.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재정비사업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2월)	준공
	한옥지원센터 운영 및 한옥살이 지원 사업	사무 관리비	480	37	7.7	'23.08.	'24.01.	'24.05.	한옥 유지관리 매뉴얼 책자 제작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5월)	준공
	역사기옥 사무민간위탁 지원	사무 관리비	163	54	33.3	'23.12.	'24.11.	-	한옥 파빌리온 관리 운영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11월)	미준공
'23.12.						'24.03.	-	한옥밀집지역 도보지도 2종 제작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3월)	준공	
인사동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시설비	337	28	8.3	'23.10.	'24.08.	-	1차 교통영향평가 용역 준공기한(2024년 8월) 미도래	미준공	
특별회계(24건) 소계			17,163	4,069	23.7					
특별	계획적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지원	시설비	300	117	38.9	'23.05.	'24.05.	'24.06.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리운영 방안 수립용역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6월)	준공
	공공주택 건설 (추가8만호)	시설비	1,071	249	23.3	'23.12.	'24.10.	-	인구구조 변화등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전략 수립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10월)	미준공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시설비	130	105	80.8	'23.10.	'24.06.	'24.07.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6월)	미준공

회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률 (%)	계약일	사업종료일		사고이월사유	현황 (`24.6.)
							당초	변경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사무 관리비	61	38	61.5	`23.12.	`24.03.	-	법령개정에 따른 정책효과 검토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3월)	준공
						`23.12.	`24.06.	`24.09.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9월)	미준공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사무 관리비	402	16	4.0	`23.12.	`24.03.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공모신청구역 실태조사 및 자료집 기획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024년 3월)	준공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 관리비	187	34	18.1	`23.09.	`24.09.	-	e-정비사업 아카데미 컨텐츠 제작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9월)	미준공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방안 마련 용역	시설비	400	195	48.6	`23.12.	`24.12.	-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024년 하반기)	미준공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	사무 관리비	100	10	10.4	`23.03.	`24.03.	-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3월)	준공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사무 관리비	2,101	675	32.1	`23.03.	`24.03.	-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3월)	준공
	서울시 주택시장 동향 조사 및 분석	사무 관리비	191	27	14.0	`23.11.	`24.05.	`24.11.	서울시 주택시장 동향 조사 및 분석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11월)	미준공
	서울시 주거안전 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	연구 용역비	300	147	49.0	`23.03.	`24.03.	-	서울시 주거안전 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024년 3월)	준공
	전월세 물량예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무 관리비	200	95	47.6	`23.05.	`24.05.	-	전월세 물량예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5월)	준공
						`23.08.	`24.01.	-	전세제도의 주택시장 효과분석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1월)	준공
	재정비촉진계획수 립 (변경)비용 지원	시설비	200	49	24.6	`23.05.	`24.05.	`24.06.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정책 검토 및 준치지역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6월)	준공
	도립천 제2지류 하천조성공사	시설비	165	87	52.6	`23.04.	`24.12.	-	도립천제2지류 하천조성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024년 12월)	미준공
	주거재생사업 관리	시설비	20	19	94.6	`23.12.	`24.03.	-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시설공사비 차년도 이월 (2024년 3월)	준공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무 관리비	112	27	23.9	`23.10.	`24.06.	-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 및 현장조사를 위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6월)	미준공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5,499	1,168	21.2	`19.11.	`24.10.	-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2024년 10월)	미준공
	육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130	27	1.3	`23.11.	`24.05.	`24.08.	윤씨가옥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8월)	미준공
	안심 집수리사업 활성화	사무 관리비	939	141	15.0	`23.08.	`24.08.	-	시민 대상 집수리 아카데미 실습 교육기간(2023년 8월~2024년 8월)에 맞추어 일부 예산 차년도 이월	미준공
	안심 집수리사업 활성화	시설비	43	6	13.1	`23.12.	`24.06.	-	화곡2동 456-17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6월)	준공

회 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이월률 (%)	계약일	사업종료일		사고이월사유	현황 (`24.6.)
							당초	변경		
	경북공 서측 도시 재생활성화 사업	사무 관리비	398	119	29.9	'23.08.	'24.09.	-	경북공 서측 경관개선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9월)	미준공
	경북공 서측 도시 재생활성화 사업	시설비	1,228	309	25.2	'23.09.	'24.02.	-	'23년 하반기 경북공 서측 목조주택 환개미 피해진단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2월)	준공
	북촌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시설비	500	56	11.2	'23.12.	'24.05.	-	동절기 비한옥 담장개선공사 착수 불가로 공사용역 이월(2024년 5월)	준공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	시설비	485	355	73.2	'23.12.	'25.06.	-	장기계속사업으로 1차년도 준공기한 미도래(2024년 4월)에 따라 선금금 제외한 잔액 이월	준공

-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방안 마련 용역’은 조합방식의 정비사업에서 겪는 전문성 부재, 자금조달 능력 부족, 주민갈등 등을 해소하여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지원’¹⁸⁾ 제도의 성과와 한계¹⁹⁾를 분석하고,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 4억원 중 절반에 달하는 1억 9천5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 사업은 최근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로 인한 사업대상지의 증가가 예상되고, 기존 정비사업장에서는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용역으로 사료되나, '23년 2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용역발주가 10개월이 지난 12월에 계약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준공시점을 금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지만 과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예산이 불용될 것이 우려되는 바, 용역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음.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을 말함.

19) 소관부서(주거정비과)는 ▲ 설계도서 확정 이후 시공자 선정 시 브랜드, 특화설계 등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 ▲ 공공지원 용자의 한계로 인해 사업비 차입이 가능한 시공자 선정 전, 사업초기 단계에서 자금조달 방안 부재로 사업추진 동력 저하 ▲ '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성화 한계 ▲ 임원(추진위원) 선거 시 연임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발생 등을 한계점으로 분석하고 있음.

-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은 서울한옥 4.0 재창조²⁰⁾ 실천 과제인 ‘한옥마을 확대 조성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위해 지난 해 제1회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현액의 73.2%에 해당하는 3억 5천5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이 사업은 한옥마을 조성 대상지로 선정된 4개소에 대하여 ‘신규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마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마련’, ‘사업타당성 조사 및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23년 후반기에 계약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유찰(무응찰)로 인한 재공고 등 계약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고, 이월된 금액 중 3억 3천4백만원을 금년 5월에 1차준공비로 지급하였으며, 남은 2천1백만원은 12월에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주택정책실의 사고이월 사업 검토결과, 세부사업 32건 중 23건이 ‘23년 하반기에 발주되었는데, 과업추진에 있어 여건에 따라 계약이 지연되거나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행기관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지출 원인행위를 회계연도 출납폐쇄가 다가오는 하반기에 이행하여 빈번한 사고이월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향후, 사고이월 감소를 위해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되, 해당연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발주일정을 관리하고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은 공정률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 등 연

20)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

차별로 적정예상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라)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

▶ 집행잔액 총괄

- 2023년도 주택정책실의 불용액(집행잔액) 규모는 2,105억 6천2백만원이며, 예산현액(4조 3,411억 4천1백만원) 대비 불용률은 4.9%임.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8억 5천1백만원(전체 집행잔액의 7.5%), 주택사업특별회계 1,703억 2천3백만원(80.9%), 도시개발특별회계 2백만원(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43억 8천6백만원(11.6%)이 각각 발생하였음.
- 사유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 139억 3천2백만원(전체 집행잔액의 6.6%),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836억 3천9백만원(39.7%), 낙찰차액 3억 3천8백만원(0.2%), 지출잔액 1,110억 8천1백만원(52.8%), 예비비 15억 7천2백만원(0.7%)이며, 전체 집행잔액의 52.8%를 차지하고 있는 ‘지출잔액’은 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불용률이 100%인 사업은 예비비를 제외하고, 7건이며 예산현액 순으로 ‘홍제3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28억 2백만원,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11억 1천7백만원,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통합공공임대주택)’ 8억 7천6백만원, ‘양천구 신월3동 스마트도시 재생 뉴딜사업 지원’ 7억 5천6백만원, ‘성동구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3억 1천5백만원, '구로구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3억 1천5백만원,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3천만원임.

- 불용률이 20% 이상이거나 불용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총 54건, 2,047억 4천6백만원으로 목록은 다음과 같음.

<불용률 20% 또는 불용액 10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일반 (14)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주택정책과)	30	-	-	30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불법전매 신고건수 없음)
	기본경비(주택정책과)	592	291	-	300	50.7%	- 예산편성기준 대비 국내출장 건수 감소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모 범단지 지원(공동주택지원과)	405	259	-	145	35.9%	- 모범단지 지원 자치구 신청 저조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 (공동주택지원과)	137	108	-	29	21.5%	- 층간소음 컨설팅 사업 신청 저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공동주택지원과)	85	64	-	21	24.5%	- 공동주택 품질점검 이의제기 미발생하여 점검위원 재점검 수당 미지급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도정)(주거정비과)	188,764	182,433	-	6,331	3.4%	-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입 감소로 인한 주특회계 전 출금 감소
	건축문화포털 아카이빙 운영 및 유지관리(건축기획과)	30	14	-	16	52.5%	- 누리집 오픈심의 승인 지연('23. 8.)에 따른 유지 관리 용역 지연 발주
	의회청사 건립 등 타당성조사 용역(건축기획과)	700	1	461	238	33.9%	- 당초 의회 편성 예산으로 과업범위 확정 과정에서 예산 감축
일반 (14)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건축기획과)	245	192	-	53	21.5%	- 낙찰차액 및 용역업체 미선정으로 인한 불용액 발 생(송파구)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재축)(재정비촉진사 업과)	188,764	182,433	-	6,331	3.4%	-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입 감소로 인한 주특회계 전 출금 감소
	안심 집수리 이자사업 (주거환경개선과)	300	168	-	131	43.9%	- 안심 집수리 용자 지원의 이율 부담이 더욱 저렴 하여 이자 지원 신청 감소 (이자 2.0% > 용자 0.7% 부담)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지역건축안전센터)	210	153	-	57	27.1%	-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에 대한 자치구 신청 저조
주택 특별 (37)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지역건축안전센터)	3,318	125	-	1,183	35.7%	- 당초 '22년 종료사업 - 건축물관리법 개정 예상에 따라 불용예산 명시이 월하였으나, 집행잔액 발생 (국고보조금 반납금: 2,010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지역건축안전센터)	2	-	-	1	86.4%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 자치구 집행잔액과 일괄 반납 예정이었으나, 자치 구 반납예산 미확보로 '24년 반납 예정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주택정책과)	7,473	2,465	-	5,008	67.0%	- 계약 시공사 법정관리 및 미착공
	예비비(국민)(주택정책과)	881	-	-	881	100.0%	-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주택 특별 (37)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 원사업(주택정책과)	110,630	93,519	-	17,111	15.5%	- 금리 상승 등으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규대출 신청건수 감소
	청년 월세 지원(주택정책과)	64,803	60,233	-	4,590	7.1%	- 1차모집 미달로 2차 추가모집 진행 - 2차 추가모집 선정인원은 8월부터 지원금 지급(5 개월분만 집행)
	노장청 세대통합 주택공급 (주택정책과)	223	73	-	150	67.4%	- 노장청 세대통합주택 시범사업 대상지 전면 재검 토에 따른 불용액 발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택정책과)	54,724	27,718	10,000	14,220	26.0%	- 국비 사업으로 전국 동일한 소득·월세 기준 적용하 여 대상 선발 어려움 - 정부 예측인원 대비 서울시 선발인원 부족(예측 26,180 > 선발 17,305)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주	155,702	154,295	-	1,408	0.9%	- 임대주택 운영관리 특성상 정확한 집행예측 어려움

회계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택정책과)						- 임차인 입.퇴거 및 일장적 유지보수 소요현황에 따라 편성액 대비 잔액 발생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전략주택공급과)	3,357	65	-	3,293	98.1%	- 공공기여방안 재설정 등 사업구조 개선하여 계획(안) 재수립 예정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공공주택과)	17,995	12,930	-	5,065	28.1%	- 신규 및 기존 사업장 공사지연으로 임대주택 매입 실적 감소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공공주택과)	19,388	14,597	-	4,791	24.7%	- 사업지 준공 지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시기 미도래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통합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과)	876	-	-	876	100.0%	- 사업지 사업계획승인 지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시기 미도래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공공주택과)	676	155	-	521	77.0%	- 사업지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시기 미도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 지원(공공주택과)	8,539	7,159	-	1,380	16.2%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 세대수 감소하여 국고보조금 신청액 감소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공공주택과)	5,479	2,929	249	2,301	42.0%	- 일부 공공주택건설사업 재검토 및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미집행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과)	59,115	30,710	8,641	19,764	33.4%	- 공공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추가검토에 따른 일정 순연으로 국고보조금 미집행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공공주택과)	236,483	214,492	-	21,991	9.3%	- 일부 사업지 공정 지연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신청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공공주택과)	153,474	148,569	-	4,904	3.2%	- 신규 및 기존 사업지 공사지연으로 임대주택 매입비 지급액 감소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주거정비과)	25,000	20,794	-	4,206	16.8%	- 경기 침체 및 대출 규제 등으로 편성기준 대비 조합 등 융자금 신청 저조
	추진위/조합 공공 지원(주거정비과)	1,372	539	-	833	60.7%	- 정비구역 지정 지연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및 조합직접설립 지원대상구역 감소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주거정비과)	403	304	16	82	20.5%	- 재개발 후보지 구역 수 감소로 구역전담제 및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감소
	주거정비사업 관리(주거정비과)	412	152	-	260	63.1%	- 용산구 중산사범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시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결정 - 시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미집행
	예비비(도정)(주거정비과)	948	-	-	948	100.0%	-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정)(주거정비과)	420,000	384,000	-	36,000	8.6%	- 주특회계 도정계정 세입 감소에 따른 통안기금 예탁금 감소
	홍제3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주거정비과)	2,802	-	-	2,802	100.0%	- 홍제3구역 미준공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미집행
	반환금 및 기타(주거정비과)	429	248	-	181	42.2%	- 주택사업특별회계 환지 청산금 자치구 재배정 후 집행잔액
	예비비(재촉)(재정비촉진사업과)	549	-	-	549	100.0%	-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백사마을 주거지보전 사업(주거환경개선과)	65	48	-	17	25.9%	- 백사지원센터 운영 종료
	은평구 응암3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주거환경개선과)	700	500	-	200	28.6%	- 활성화계획 미고시에 따른 예산 미교부
	성동구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주거환경개선과)	315	-	-	315	100.0%	- 활성화계획 미고시에 따른 예산 미교부
	구로구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주거환경개선과)	315	-	-	315	100.0%	- 활성화계획 미고시에 따른 예산 미교부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주거환경개선과)	1,117	-	-	1,117	100.0%	- 2단계 투자심사 미이행에 따른 예산 미교부
	양천구 신월3동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주거환경개선과)	141	-	-	141	100.0%	- 사업 구조조정(축소)에 따른 예산 미교부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주거환경개선과)	1,756	-	-	756	43.0%	- 사업 구조조정(축소)에 따른 예산 미교부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과)	2,176	1,255	27	895	41.1%	- 정비계획 변경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 및 공사 미집행
	성곽마을 관리(주거환경개선과)	898	664	-	234	26.1%	- 성곽마을 앵커시설 운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주택 특별 (37)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주거환경개선과)	10,650	4,268	-	6,382	59.9%	- 상반기 모집 취소 건 다수 발생 - 하반기 모집 참여율 저조 (모집범위·기간 조정하여 '24년 정상추진)

회계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학교 특별 (3)	안심 집수리 용자사업 (주거환경개선과)	4,000	2,988	-	1,012	25.3%	- 안심 집수리 용자지원 결정 후 취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공동주택지원과)	913	673	-	240	26.2%	- 소송 및 환급 건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급 제외(패소 4건, 기부채납 환급 1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비비 (공동주택지원과)	141	-	-	141	100.0%	-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공동주택지원과)	33,700	9,700	-	24,000	71.2%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감소에 따른 통안기금 예탁금 감소

▶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제외하고 불용액이 가장 큰 사업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과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임.

-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은 6개 재개발 구역의 공정 지연에 따른 국고 보조금 미신청으로 219억 9천1백만원²¹⁾이 불용(불용률 9.3%)되었고,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장지차고지, 신촌동주민센터 등 9개 대상지의 사업계획 추가 검토로 인해 사업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미신청 분인 197억 6천4백만원²²⁾이 불용(불용률 33.4%)되었음.

-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의 경우 2022회계연도(395억 4천9백만원, 불용률 17.2%)에 비해 불용규모를 축소하였으나,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의 특성상 예산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21) 계약 미체결에 따른 국비 1천8백만원 및 공정률 미달성으로 인한 시비 43억 3천만원이며, 국고 보조금은 착공 이후 조합의 요청에 따라 계약체결 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교부받게 되는 사항으로, '23년 일부 구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국고보조금 일부가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22) 전액 국비로, 신청시기(사업승인) 미도래 따른 재원 없는 불용이며, 향후 신청시기가 도래하면 예산편성 후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

<(참고) 공적임대주택 24만호 및 추가8만호 공급 - 2023회계연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 계		1,781,948	1,106,963	580,928	87,088	4.9%	
공 적 임 대 주 택	공공임대 매입형	소 계	1,301,351	715,857	546,565	31,960	2.5%
		일반(다가구) 매입임대	446,650	135,838	310,812	-	-
		청년 매입임대 사업	163,850	49,155	114,695	-	-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158,560	50,977	107,583	-	-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19,365	5,890	13,475	-	-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98,887	91,918	-	-	-
		역세권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	6,088	6,088	-	-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17,995	12,930	-	5,065	28.1%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36,483	214,492	-	21,991	9.3%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	153,473	148,569	-	4,904	3.2%
	공공임대 임차형	소 계	243,182	217,709	25,473	-	-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	90,960	65,487	25,473	-	-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	152,222	152,222	-	-	-
	공공임대 건설형	소 계	48,360	32,492	-	15,868	32.8%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3,357	65	-	3,292	98.1%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7,473	2,465	-	5,008	67.0%
		시유지활용 공공주택 공급	19,388	14,597	-	4,791	24.7%
		시유지활용 공공주택 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	876	-	-	876	100.0%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676	155	-	521	77.1%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건설 지원	8,051	8,051	-	-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 지원	8,539	7,159	-	1,380	16.2%
	공공지원	소 계	124,461	107,266	-	17,195	13.8%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10,100	10,035	-	65	0.6%
		사회주택 공급	2,086	2,069	-	17	0.8%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1,645	1,643	-	2	0.1%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지원사업*	110,630	93,519	-	17,111	15.5%
	추가 8만호	소 계	64,594	33,639	8,890	22,065	34.2%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5,479	2,929	249	2,301	42.0%	
공공주택건설(추가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59,115	30,710	8,641	19,764	33.4%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님과 별도거주 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2년에서 이월된 333억 2천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47억 2천4백만원 중 보조금 반납금 27억 8천6백만원을 제외한 142억 2천만원을 불용하였음(26.0%).

- 이 사업은 당초 정부(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1년간, '22년~'23년)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집행기관은 예산편성 당시 근거가 된 정부의 수요예측(26,180명)이 과도하였기 때문에 불용률(17,305선발)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그러나, 금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주재로 개최된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 23)에 따른 후속조치24)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바,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주요항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2023)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023)
신청기간	'23. 5. 3.~5.16. (14일간)	'22. 8.22. ~ '23. 8.31. (수시)
지원대상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독립가구
지원규모	25,000명	26,180명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x 12개월	월 최대 20만원 x 12개월 (1년 한시)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약312만원) *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원가구) 부과액으로 판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약 540만원)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약124만원)
재산요건	청년 일반재산 1억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지원신청 제외대상	(공통)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소지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부모 건물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공통) 좌동 2촌이내 주택 임차 1실 다수거주 전대차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 기수혜자
구비서류	(필수)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주민등록등본	(필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위임장, 부채증빙 서류 등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복지로포털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예산 보조율	시비 100%	국비 30% 시비 70% 매칭
추진기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청인 거주지 관할 자치구

23) “오세훈 시장,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권한·역량 총동원”(2024.5.1. 보도자료)
24)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 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2024.5.27. 보도자료)

-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은 공공토지 고갈에 따른 한계 극복을 위해 민간의 토지를 활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브랜드명 “상생주택”)으로, ‘23년도 신규 대상지에 대한 사업비를 위해 33억 5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저조로 전액에 가까운 32억 9천3백만원을 불용하였음(불용률 98.1%).

<상생주택 '23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계	3,357	64	0	0	3,293	98.1%	
사무관리비	15	14	0	0	1	6.7	집행잔액
시설비	690	50	0	0	640	92.8	토지사용 협의 지연 등
출자금	2,652	0	0	0	2,652	100.0	토지사용 협의 지연 등

- 집행기관은 이 사업이 공공주택 건설 공급을 위해 민간토지를 장기간 임차하는 구조적 특성상 높은 토지임대료²⁵⁾가 발생하여, 토지주와의 토지사용 협의회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진단하고, 사업구조를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상생주택은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도심 내 유휴 민간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다양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나, 향후 토지주에 대한 인센티브 및 계획수립기준 등 사업구조를 재정비하여 추진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겠음²⁶⁾.

25) '24년 예산 편성 시 기획조정실은 토지를 매입하는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26) 이와 관련하여, 상생주택의 사업구조 다양화 및 공공기여 기준 조정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의된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81)이 심사 예정임.

- ‘홍제3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는 서대문구 홍제동 474번지 일대에서 시행중인 주택재개발사업내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정비기반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3년도 예산 28억 2백만원을 전액 미집행 하였음.

<홍제3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대문구 홍제동 474번지 외9필지 일대(홍제동 해링턴플레이스) - 면적 : 58,375.4㎡ - 규모 : 18동(지하3층~지상20층), 1,116세대 -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지정('09.10.) ▶ 조합설립('10.04.) ▶ 사업시행인가('11.06.) ▶ 관리처분인가('16.09.) ▶ 착공('18.05.)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24.03.) ▶ 최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일('24.05.)

- 대상지는 `18년 5월에 착공하여 `23년 7월 사업시행자(조합)로부터 준공인가 신청(조합→區)이 있었으나, 서대문구에서 정비기반시설(도로)의 폭원 확폭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용 지원을 위한 보조금신청을 연내 이행하지 않아 미집행된 것으로 파악됨. `24년 3월 정비기반시설이 준공되었기에 서대문구로부터 금년도 보조금 신청이 있을 경우 `25년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은 강서구 공항동 60-28번지 일대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마중물 사업(생활SOC확충²⁷⁾)을 위한 공사비 11억 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하였음.

- 이 사업은 활성화계획이 `23년 7월에 고시되어 당해연도 마지막 투자심사 신청기한(`23.8)까지의 시간이 촉박하고, 투자심사를 이행하더라도 하

27) 청년지원센터(가칭) 및 돌봄지원센터(가칭)

반기에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시 자치구에서 예산 집행이 곤란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소관부서(주거환경개선과)가 명시이월을 검토하였으나, 시 예산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월이 아닌 불용처리키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됨.

- 현재 투자심사를 완료('24.2.)하여 추후 예산이 편성될 경우 사업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고시된 활성화계획을 비롯하여 후속절차가 순연된 결과 현장에서는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어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바, 향후 신속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필요하겠음.

○ '성동구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지원'과 '구로구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은 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개량사업 지원을 위해 총 3억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하였음.

- 두 사업은 공통적으로 대상지 내 일부 지역이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개발(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해당 사업의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며, 잔여구역에서도 주택개량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파악됨.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52개소) 유형별 현황>

특별법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비고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경제기반형	중심사가지형		일반근린형 / 주거지원형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		일자리거점 육성형(5)	생활중심지 특화형(15)		주거지 재생형(32)	
구분	선정연도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54)	국가 지원 (17)	'14(1)	-		· (선도) 창신송인(뉴딜'14)(완료)	- 총 52개소 -
		'15(3)	· 창동상계(뉴딜'16) (마무리단계)	-	· (선도) 가리봉(뉴딜'16)(완료) · (선도) 해방촌(뉴딜'16)(완료)	△'14년: 6개소 (국비지원 1개포함)
		'17(8)	· 홍릉연구단지 (뉴딜'19)	· 안암동(뉴딜'20) · 독산동 우시장(뉴딜'19)	· (2단계) 목동 천연층동 수유동 불광동(뉴딜'18) · (2단계) 난곡남향동(뉴딜'18)(완료)	△'15년: 7개소 (국비지원 3개포함)
		'18(2)	-	-	· (3단계) 도봉2동, 사당3동(뉴딜'19)	△'17년: 15개소

서울시 (37)	'19(1)	-	-	· (4단계) 목3동(뉴딜'16)	(뉴딜 8개포함) △'18년: 5개소 (뉴딜 2개포함) △'19년: 12개소 (뉴딜 1개포함) △'20년: 5개소 (뉴딜 2개포함) △'21년: 2개소
	'20(2)	-	-	· (4단계) 신월2동, 중화2동(뉴딜'20)	
	'14(5)	-	-	· (1단계) 성수동, 신촌동, 암사동, 장위동, 상도4동 (이상 5개소 완료)	
	'15(4)	· 서울역 일대(완료) · 장안평 일대(완료)	· 세운상가 일대(마무리단계) · 창덕궁앞 도성한복관(완료)	-	
	'17(7)	· 영등포경인로 일대	· 용산전자상가, 마장동, 정동, 4.19사거리, 청량리-제기동	· (2단계) 창3동	
	'18(3)	-	-	· (3단계) 송정동, 인수동, 상내2동	
	'19(11)	-	· 홍제역, 효창공원, 면목패션봉 제진흥지구, 구의역, 풍납동, · 북촌가회동	· (4단계) 응암3동, 시근동, 공향동, 경복궁서측(청운효자사지동) · (4단계) 구로2동	
	'20(3)	-	-	· (5단계) 독산2동, 신월1동, 망우본동	
'21(2)	-	-	· 용답상가시장, 화곡중앙시장		
서울시 소관부서	균형발전본부		주택정책실	'22.8.19. 조직개편	

(출처: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내부자료)

○ ‘안십 집수리 보조사업’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²⁸⁾ 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과 반지하 주택, 주거취약가구에 대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05억 5천만원 중 42억 7백만원을 지출하고 63억 8천3백만원을 불용하였음(불용률 59.9%).

- 이 사업은 금년 3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취약 거주시설²⁹⁾에 대해서는 보조 및 융자지원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8)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함.

29)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거 취약가구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다문화 가정을 의미함

- 특히, 모집 건수(1,677건) 대비 지원건(508건)이 1/3 정도에 불과한 것은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용(총 공사비의 20%)이 과다하다는 이유³⁰⁾ 등으로 신청을 취소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추후 시민들에게 사업내용의 명확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으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도출된 불만족 사항³¹⁾을 개선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됨.

<최근 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추진실적>

2021년도	○ 집수리 비용 지원 : 1,905건
2022년도	○ 집수리 비용 지원 : 949건
2023년도	○ 집수리 비용 지원 : 508건

- ‘안심 집수리 용자사업’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수리 사업에 투입된 공사비용을 용자³²⁾해주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0억 중 25.3%에 해당하는 10억 1천2백만원이 불용하였음.
- 이는 신청인과 시공업체 간 마찰 등의 이유로 착공이 지연되어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용이 불량하거나 보증서 발급 기한의 경과 등으로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용자지원 결정 건수 140건(44억 5천4백만원) 중 37건이 취소되어 10억 1천2백만원이 불용이 발

30) 자부담 비용이 없는 ‘희망의 집수리’사업과 혼동하여 신청한 사례 다수
 31) '23년 보조금 지원한 50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만족’ 또는 ‘매우불만족’으로 답한 건수가 4건(0.8%)로 사유는 ‘시공업체 선정의 어려움’ 및 ‘보조금 지급까지 장기간 소요’, ‘허용되는 공사 가능 범위 제한’ 등이 있음(응답률 90.9%).
 32) 공사비의 80%, 최대 6천만원을 0.7% 금리로 용자지원

생한 것으로 파악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는 용자지원 기간을 60일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착수신고서를 1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포기 대상자를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추가 신청자를 신속히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4. 종합의견

-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세출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검토 결과, 불용액 규모는 서울시 전체 불용액 2조 2,388억 5천만원 중 9.4%를 차지하는 2,105억 6천2백만원³³⁾으로, 불용금액 규모와 서울시 전체 불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 가운데, 주택정책실의 불용률 또한 전년대비 6.7%p 감소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사료되나, 주택정책실 소관 세출 예산 불용률(4.9%)은 여전히 서울시 전체 불용률(4.3%)을 상회하고 있어, 향후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고 있고, 32건의 사고이월 중 26건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는 상황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예산집행의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향후 주택정책실에서 추진할 용역은 연내 공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수립 하에 예산편성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집행잔액과 관련해서는,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집행에서 188억원,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서 171억원 등 대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최근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

33) 202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불용액은 규모는 복지정책실(5,192억 1천5백만원), 평생교육국(2,373억 1천9백만원), 도시교통실(2,123억 6천7백만원) 다음으로 큰 규모임.

황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됨.

의안심사지원팀장 강대만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조윤길	02-2180-8208

[붙임1] 2023회계연도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p.53)

[붙임2]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 사업별 진행률('24.6. 기준) 현황(p.78)

[붙임3]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개요(p.79)

[붙임4] 결산검사위원 시정권고사항(9건) 및 조치계획(p.81)

붙임1 2023회계연도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I 부서별 집행잔액 내역

□ 총괄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4,341,141	3,521,890	595,915	12,774	210,562	4.9%
주택정책과	2,077,483	1,474,150	556,565	2,787	43,982	2.1%
전략주택공급과	293,520	282,741	117	6,969	3,694	1.3%
공공주택과	751,032	655,070	34,363	-	61,599	8.2%
공동주택지원과	44,437	19,441	320	1	24,674	55.5%
주거정비과	664,365	609,309	244	-	54,812	8.3%
주택정책지원센터	5,293	3,945	1,292	-	56	1.1%
건축기획과	14,445	13,384	533	-	528	3.7%
재정비촉진사업과	404,577	397,456	136	-	6,985	1.7%
주거환경개선과	68,839	54,180	1,387	1,000	12,273	17.8%
지역건축안전센터	5,556	2,210	-	2,017	1,329	23.9%
한옥정책과	11,593	10,003	958	-	632	5.5%

□ 주택정책과

○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2,077,483	1,474,150	556,565	43,981	2.1%
일반회계	851,677	851,211	-	466	0.1%
주택사업특별회계	1,225,806	622,939	556,565	43,515	3.5%

○ 사업별 집행내역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계	851,677	851,211	-	-	466	0.1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333	296	-	-	38	11.3	집행잔액
희망의 집수리사업	4,110	4,109	-	-	1	-	-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1,646	1,643	-	-	2	0.1	집행잔액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1,506	1,473	-	-	32	2.2	집행잔액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698,550	698,550	-	-	-	-	-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59	58	-	-	1	1.9	집행잔액
공공임대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237	228	-	-	9	3.9	집행잔액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30	-	-	-	30	100.0	불법전매 신고건수 없음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976	963	-	-	14	1.4	집행잔액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7,864	7,864	-	-	-	-	-
서울주거포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330	291	-	-	39	11.8	낙찰차액 등
기본경비	592	291	-	-	300	50.7	예산편성기준 대비 출장건수 감소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31,500	31,500	-	-	-	-	-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국민계정)	103,000	103,000	-	-	-	-	-
국고보조금 반환(일반)	945	945	-	-	-	-	-

-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 계	1,225,806	622,939	556,565	-	43,515	0.1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446,651	135,838	310,812	-	-	-	-
사회주택 공급	2,086	2,069	-	-	17	0.8	집행잔액
청년 매입임대 사업	163,850	49,155	114,695	-	-	-	-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158,560	50,977	107,583	-	-	-	-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10,100	10,034	-	-	65	0.6	집행잔액
공공원룸주택 매입임대 사업	19,365	5,891	13,475	-	-	-	-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7,473	2,465	-	-	5,008	67.0	계약 시공사 법정 관리 등에 따른 착공 지연
주거종합계획 수립	288	288	-	-	-	-	-
예비비(국민)	881	-	-	-	881	100.0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110,630	93,519	-	-	17,111	15.5	금리 상승 등으로 신규대출 신청 감소
주거복지센터 운영	6,057	6,057	-	-	1	-	-
청년 월세 지원	64,803	60,233	-	-	4,570	7.1	집행잔액
노장청 세대통합 주택공급	223	73	-	-	150	67.4	시범사업 대상지 전면 재검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4,724	27,718	10,000	-	14,220	26.0	전국 동일 소득·월세 기준으로 대상자 부족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사업	3,487	3,487	-	-	-	-	-
비주택 거주 및 저장강박가구 지원	130	130	-	-	-	-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매입임대)	600	600	-	-	-	-	-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155,702	154,295	-	-	1,407	0.9	집행잔액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장기임대)	6,500	6,500	-	-	-	-	-
지방채 이자상환(국민)	7,494	7,494	-	-	-	-	-
국고보조금 반환(도정)	4	4	-	-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국민)	6,199	6,114	-	-	85	1.4	집행잔액

□ 전략주택공급과

○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293,520	282,741	117	3,694	1.3%
일반회계	170	148	-	22	12.9%
주택사업특별회계	293,350	282,593	117	3,672	1.3%

○ 사업별 집행내역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계	170	148	-	-	22	12.9	
기본경비	57	57	-	-	-	-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113	91	-	-	22	19.3	건설경기 악화로 위원회 개최 감소

-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계	293,350	282,593	-	117	3,672	1.3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98,887	91,918	-	-	-	-	-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	152,222	152,222	-	-	-	-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종합지원 센터 운영	665	665	-	-	-	-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4	4	-	-	-	-	-
역세권 청년주택 위탁관리	5,891	5,891	-	-	-	-	-
역세권청년주택 SH공사 선매입	6,088	6,088	-	-	-	-	-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3,357	65	-	-	3,293	98.1	사업구조 개선 등 계획(안) 재 수립 예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627	627	-	-	-	-	-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25,609	25,113	-	117	379	1.5	집행잔액

□ 공공주택과

○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751,032	655,070	34,363	61,599	8.2%
일반회계	105	104	-	1	1.0%
주택사업특별회계	750,927	654,966	34,363	61,598	8.2%

○ 사업별 집행내역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계	105	104	-	-	1	1.0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36	36	-	-	-	-	-
기본경비	69	68	-	-	1	1.4	-

-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계	750,927	654,966	34,114	249	61,598	8.2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90,960	65,487	25,473	-	1	-	-
기존주택 전세임대 경상보조 지원	9,033	9,033	-	-	-	-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17,995	12,930	-	-	5,065	28.1	일부 사업지 공 정 지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16,839	16,839	-	-	-	-	-
서울리츠3호 출자금	12,140	12,140	-	-	-	-	-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19,388	14,597	-	-	4,791	24.7	사업지 준공 지연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통합 공공임대주택)	876	-	-	-	876	100.0	사업계획승인 지연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676	155	-	-	521	77.0	사업지 준공 지연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8,051	8,051	-	-	-	-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 지원	8,539	7,159	-	-	1,380	16.2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급세대 감소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5,479	2,929	-	249	2,301	42.0	일부 사업 재검토 및 사업계획 변경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59,115	30,710	8,641	-	19,764	33.4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	84	83	-	-	1	1.3	집행잔액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 지원	78	78	-	-	-	-	-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36,483	214,492	-	-	21,991	9.3	일부 사업지 공정 지연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	153,474	148,569	-	-	4,904	3.2	일부 사업지 공정 지연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	85,268	85,268	-	-	-	-	-
재개발임대주택 현물출자분 임대보증금 반환	2,000	2,000	-	-	-	-	-
국고보조금 반환(국민)	1,885	1,883	-	-	2	0.1	집행잔액
지방채 상환(도정)	22,563	22,563	-	-	-	-	-

□ 공동주택지원과

○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44,437	19,442	321	24,674	55.5%
일반회계	9,337	8,898	178	260	2.8%
주택사업특별회계	316	145	143	28	8.9%
학교용지특별회계	34,784	10,399	-	24,386	70.1%

○ 사업별 집행내역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계	9,337	8,898	-	178	260	2.8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유지보수	130	130	-	-	-	-	-
공동주택관리지원	363	353	-	-	10	2.7	집행잔액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모범단지 지원	405	259	-	-	145	35.9	모범단지 지원 자치구 신청 저조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	137	108	-	-	29	21.5	층간소음 컨설팅 신청 저조
공동주택 투명한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환경 조성	484	433	-	-	51	10.6	자문위원회 개최 감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85	64	-	-	21	24.5	품질점검 이의제 기 미발생
아파트지구 행정절차 이행비용	30	14	-	15	1	4.0	집행잔액
서울시 소유 공용 부분 관리비	7	7	-	-	-	1.7	집행잔액
소송등 수행	6	6	-	-	1	8.3	집행잔액
시민아파트 정리	7,649	7,484	-	163	2	-	-
기본경비	41	41	-	-	-	0.7	집행잔액

-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 계	750,927	654,966	34,114	249	61,598	8.2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90,960	65,487	25,473	-	1	-	-
기존주택 전세임대 경상보조 지원	9,033	9,033	-	-	-	-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17,995	12,930	-	-	5,065	28.1	일부 사업지 공정 지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16,839	16,839	-	-	-	-	-
서울리츠3호 출자금	12,140	12,140	-	-	-	-	-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19,388	14,597	-	-	4,791	24.7	사업지 준공 지연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통합 공공임대주택)	876	-	-	-	876	100.0	사업계획승인 지연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676	155	-	-	521	77.0	사업지 준공 지연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8,051	8,051	-	-	-	-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 지원	8,539	7,159	-	-	1,380	16.2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급세대 감소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5,479	2,929	-	249	2,301	42.0	일부 사업 재검토 및 사업계획 변경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59,115	30,710	8,641	-	19,764	33.4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	84	83	-	-	1	1.3	집행잔액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 지원	78	78	-	-	-	-	-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36,483	214,492	-	-	21,991	9.3	일부 사업지 공정 지연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	153,474	148,569	-	-	4,904	3.2	일부 사업지 공정 지연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	85,268	85,268	-	-	-	-	-
재개발임대주택 현물출자분 임대보증금 반환	2,000	2,000	-	-	-	-	-
국고보조금 반환(국민)	1,885	1,883	-	-	2	0.1	집행잔액
지방채 상환(도정)	22,563	22,563	-	-	-	-	-

□ 주거정비과

○ 총 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 계	664,366	609,308	244	54,812	8.3%
일반회계	188,765	182,433	-	6,331	3.4%
주택사업특별회계	475,601	426,875	244	48,481	10.2%

○ 사업별 집행내역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 계	188,765	182,433	-	-	6,331	3.4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도정계정)	188,765	182,433	-	-	6,331	3.4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입 감소

-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 계	475,601	609,308	-	244	54,812	8.3	
주택 정비사업 용자금 지원	25,000	20,794	-	-	4,206	16.8	경기 침체 등으로 신청 저조
추진위/조합 공공 지원	1,372	539	-	-	833	60.7	정비구역 지정 지연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500	472	-	-	29	5.7	집행잔액
공공정비계획수립	12,709	10,737	-	-	1,972	15.5	자치구 신청 저조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712	712	-	-	-	-	-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263	246	-	-	17	6.7	집행잔액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403	304	-	16	82	20.5	재개발후보지 구역 수 감소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187	152	-	34	1	0.4	집행잔액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주거정비사업 관리	412	152	-	-	260	63.1	시유재산 매각 감평수수료 등 미집행
예비비(도정)	948	-	-	-	948	100.0	집행사유 미 발생
정비구역 기념공간 운영 및 관리	53	49	-	-	4	7.7	집행잔액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신속통합기 획 도입 혁신적 실행방안 마련 용역	74	74	-	-	-	-	-
공공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79	79	-	-	-	-	-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 영	175	175	-	-	-	-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해제3구역 환지 처분용역	490	490	-	-	-	-	-
홍제3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2,802	-	-	-	2,802	100.0	홍제3구역 미 준공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 화 방안 마련 용역	400	195	-	195	11	2.8	집행잔액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7	6	-	-	-	0.5	집행잔액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5,000	4,264	-	-	736	14.7	경기 침체 등 으로 신청 저조
기본경비(도정)	79	68	-	-	11	13.5	집행잔액
인력운영비	3,507	3,119	-	-	388	11.1	집행잔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정)	420,000	384,000	-	-	36,000	8.6	집행잔액
반환금 및 기타	429	248	-	-	181	42.2	환지 청산금 집행잔액

□ 주택정책지원센터

○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5,293	3,945	1,292	56	1.1%
일반회계	1,404	1,038	338	28	2.0%
주택사업특별회계	3,889	2,907	954	28	0.7%

○ 사업별 집행내역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계	1,404	1,038	-	338	28	2.0	
기본경비	25	25	-	-	-	0.1	집행잔액
건축·주택 제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53	245	-	-	7	2.9	집행잔액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127	768	-	338	21	1.8	집행잔액

-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계	3,889	2,907	-	954	28	0.7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187	187	-	-	-	-	-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	100	89	-	10	-	0.2	집행잔액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2,101	1,426	-	675	-	-	-
서울시 주택시장 동향 조사 및 분석	191	164	-	27	-	-	-
서울시 주거안전 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	300	145	-	147	8	2.6	집행잔액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작성 및 공표	100	100	-	-	-	-	-
전월세 물량예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200	105	-	95	-	-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신모델 개발 용역	250	239	-	-	12	4.6	집행잔액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민관협력사업	460	452	-	-	8	1.8	집행잔액

□ 건축기획과

○ 총 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 계	14,445	13,384	533	528	3.7%
일반회계	13,185	12,146	533	506	3.8%
주택사업특별회계	1,260	1,238	-	22	1.7%

○ 사업별 집행내역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 계	13,185	12,146	-	533	506	3.8	
서울 건축문화제	297	290	-	-	7	2.3	집행잔액
건축위원회 등 운영	301	298	-	-	4	1.2	집행잔액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6,165	6,137	-	-	28	0.4	집행잔액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	2,110	2,014	-	-	96	4.5	집행잔액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506	485	-	-	20	4.0	집행잔액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32	32	-	-	-	-	-
국제교류 강화 사업	81	81	-	-	-	-	-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	235	235	-	-	-	-	-
서울시 권역별 도시기록화 사업	102	102	-	-	-	0.1	집행잔액
도시건축센터, 전시관 홈페이지 유지관리	50	49	-	-	2	3.0	집행잔액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방안 연구	104	99	-	-	5	4.5	집행잔액
건축문화포털 아카이빙 운영 및 유지관리	30	14	-	-	16	52.5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용역발주 지연
의회청사 건립 등 타당성조사 용역	700	1	-	461	238	33.9	과업범위 축소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30	30	-	-	-	-	-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30	30	-	-	-	-	-
승강기 갑힘사고 승객 구조훈련	56	56	-	-	-	-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재정비사업	377	302	-	72	4	1.0	집행잔액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	245	192	-	-	53	21.5	송파구 용역 업체 미선정 등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6	16	-	-	-	3.0	집행잔액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발간 용역	25	25	-	-	-	-	-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운영	80	68	-	-	12	15.6	집행잔액
공공건축물 야생조류 충돌방지 표준 설계자료집 작성 용역	33	29	-	-	4	12.0	집행잔액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관리시스템 재개발	513	496	-	-	17	3.3	집행잔액
기본경비	76	76	-	-	-	0.2	집행잔액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190	189	-	-	2	0.8	집행잔액
반지하 취약계층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시범사업	800	800	-	-	-	-	-

-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 계	1,260	1,238	-	-	22	1.7	
주거안전 취약계층 주택 상태 조사	1,260	1,238	-	-	22	1.7	집행잔액

□ 재정비촉진사업과

○ 총 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 계	404,577	397,456	136	6,985	1.7%
일반회계	188,823	182,492	-	6,331	3.4%
주택사업특별회계	215,754	214,964	136	654	0.3%

○ 사업별 집행내역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 계	188,823	182,492	-	-	6,331	3.4	
기본경비	59	59	-	-	-	-	-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재촉계정)	188,765	182,433	-	-	6,331	3.4	집행잔액

-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 계	215,754	214,964	-	136	6,985	1.7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770	635	-	49	86	11.2	자문회의 개최 감소
도시재정비 위원회 운영	70	69	-	-	1	1.7	집행잔액
예비비(재촉)	549	-	-	-	549	100.0	집행사유 미 발생
도림천 제2지류 하천조성공사	165	73	-	87	5	3.2	집행잔액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100	88	-	-	12	12.1	낙찰차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재촉)	214,100	214,100	-	-	-	-	-

□ 주거환경개선과

○ 총 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 계	68,840	54,180	1,387	12,272	17.8%
일반회계	387	255	-	131	34.0%
주택사업특별회계	68,453	53,925	1,387	12,141	17.7%

○ 사업별 집행내역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 계	387	255	-	-	132	34.0	
안심 집수리 이자사업	300	168	-	-	132	43.9	집수리 대상자 응 자사업 신청 선호
기본경비	87	87	-	-	-	-	-

-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 계	68,453	53,925	-	1,387	12,141	17.7	
주거재생사업 관리	94	57	-	19	18	19.5	자문회의 개최 감소
백사마을 주거지보전 사업	65	48	-	-	17	25.9	백사지원센터 운영 종료
저층주거지 시민편익시설 공급	3,855	3,555	-	-	300	7.8	집행잔액
은평구 불광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1,500	1,500	-	-	-	-	-
중랑구 묵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3,242	3,242	-	-	-	-	-
성동구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2,409	2,409	-	-	-	-	-
강북구 인수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709	709	-	-	-	-	-
도봉구 도봉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6,260	6,260	-	-	-	-	-
동작구 사당4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5,692	5,692	-	-	-	-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강동구 성내2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1,416	1,416	-	-	-	-	-
은평구 응암3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700	500	-	-	200	28.6	활성화계획 미고시
성동구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315	-	-	-	315	100.0	활성화계획 미고시
구로구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315	-	-	-	315	100.0	활성화계획 미고시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1,117	-	-	-	1,117	100.0	2단계 투자심사 미이행
양천구 신월3동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141	-	-	-	141	100.0	사업 구조조정 (축소)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1,756	-	-	-	756	43.0	사업 구조조정 (축소) ※보조금 반납금 1,000(국비)
동대문구 제기동 고대앞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1,515	1,515	-	-	-	-	-
관악구 은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1,684	1,684	-	-	-	-	-
구로구 개봉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1,800	1,800	-	-	-	-	-
도시재생 종합관리체계 구축 용역	177	177	-	-	-	-	-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5,762	4,207	-	1,195	360	6.2	집행잔액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176	1,255	-	27	895	41.1	정비계획 변경 추진
성곽마을 관리	898	664	-	-	234	26.1	앵커시설 운영 감소
안심 집수리사업 활성화	1,194	980	-	147	67	5.6	집행잔액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10,650	4,267	-	-	6,383	59.9	모집 취소 건 다수 발생
안심 집수리 응자사업	4,000	2,988	-	-	1,012	25.3	응자지원 결정 후 취소 건 발생
빈집활용 주거환경개선(빈집정비)	751	743	-	-	8	1.0	집행잔액
좌원상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4,800	4,800	-	-	-	-	-
빈집활용 주거환경개선(빈집매입)	16	13	-	-	3	16.0	빈집정책위원회 미개최
빈집활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3,445	3,445	-	-	-	-	-
국고보조금 반환(도정)	1	1	-	-	-	-	-

□ 지역건축안전센터

○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5,556	2,210	-	1,329	23.9%
일반회계	5,556	2,210	-	1,329	23.9%

○ 사업별 집행내역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계	5,556	2,210	-	-	1,329	23.9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운영	22	21	-	-	1	6.2	집행잔액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64	63	-	-	1	1.5	집행잔액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210	153	-	-	57	27.1	정밀안전진단 지원자처구 신청 저조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	213	211	-	-	2	1.1	집행잔액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57	55	-	-	2	3.4	집행잔액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760	681	-	-	79	10.4	집행잔액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3,318	125	-	-	1,183	35.7	'22년 불용예산 명시이월하였으나, 집행잔액 발생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152	151	-	-	1	0.9	집행잔액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용 지원	231	223	-	-	-	-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500	500	-	-	-	-	-
기본경비	28	27	-	-	-	0.3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	2	-	-	-	1	86.4	자치구 반납예산 미확보로 '24년 일괄 반납 예정

□ 한옥정책과

○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합계	11,593	10,003	958	632	5.5%
일반회계	8,390	7,826	119	445	5.3%
주택사업특별회계	3,145	2,121	839	185	5.9%
도시개발특별회계	58	56	-	2	2.9%

○ 사업별 집행내역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계	8,390	7,826	-	119	445	5.3	
서울시 한옥포털 운영	60	59	-	-	1	1.7	낙찰차액
한옥 등 건축자산 콘텐츠 발굴 및 홍보물 제작	165	162	-	-	3	1.8	낙찰차액 등
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319	307	-	-	12	3.6	낙찰차액 등
한옥지원센터 운영 및 한옥살이 지원사업	954	870	-	37	48	5.0	낙찰차액 등
서울 우수 한옥 인증	49	48	-	-	1	1.3	낙찰차액
역사가옥 사무민간위탁 지원	618	562	-	54	2	0.3	집행잔액
서울 공공한옥 사무민간위탁 지원	578	578	-	-	-	-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운영	70	70	-	-	-	-	-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3,670	3,300	-	-	370	10.1	집행잔액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활용사업	1,377	1,370	-	-	7	0.5	낙찰차액 등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340	310	-	28	2	0.5	집행잔액
한옥 등 건축자산 정책 홍보 전시 운영	150	150	-	-	1	0.3	낙찰차액
기본경비	40	40	-	-	-	-	-

-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 계	3,145	2,121	-	839	630	5.9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742	1,162	-	428	152	8.7	낙찰차액 등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903	825	-	56	22	2.5	낙찰차액 등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	500	134	-	355	11	2.2	집행잔액

-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명시	사고			
합 계	58	56	-	-	2	2.9	
북촌 한옥 역사관 관리 운영	58	56	-	-	2	2.9	낙찰차액 등

II

부서별 예산이월 현황

□ 주택정책과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이월사유
				명시	사고	
	합 계			556,565	-	
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72,340	83,538	188,802	-	- '23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목표 대비 실적 부진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출자금)	174,300	52,290	122,010	-	- '23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목표 대비 실적 부진
	청년 매입임대 사업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13,850	34,155	79,695	-	- '23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목표 대비 실적 부진
	청년 매입임대 사업 (출자금)	50,000	15,000	35,000	-	- '23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목표 대비 실적 부진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공사공단자본전출금)	78,750	27,027	51,723	-	- '23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목표 대비 실적 부진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출자금)	79,800	23,940	55,860	-	- '23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목표 대비 실적 부진
	공공원룸주택 매입임대 사업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2,015	3,686	8,330	-	- '23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목표 대비 실적 부진
	공공원룸주택 매입임대 사업 (출자금)	7,350	2,205	5,145	-	- '23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목표 대비 실적 부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4,512	27,595	10,000	-	- '23년 선정자 지원금 계속 지급

□ 전략주택공급과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이월사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 계			-	117	
주택사업 특별회계	계획적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지원 (시설비)	300	175	-	117	-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리 운영 방안 수립 용역 준 공기한 미도래('24. 5.)

□ 공공주택과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이월사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 계			34,113	249	
주택사업 특별회계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0,945	65,473	25,472	-	- '23년 입주대상자 모집 일정 순연으로 목표 미달 - '24년 이월하여 계속 추진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시설비)	1,071	806	-	249	-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전략 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4. 10.)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2,252	27,786	8,641	-	- 사업계획 승인 중인 사업 - 착공 전 조성비, 설계용 역비 등 지급 위해 이월

□ 공동주택지원과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이월사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 계			-	321	
일반회계	아파트지구 행정절차 이행비용 (사무관리비)	30	14	-	15	- 5개 아파트지구 심의절차 지연 에 따라 공고비용 이월
	시민아파트 정리 (시설비)	165	-	-	163	- 회현시민아파트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4. 10.)
주택사업 특별회계	원활한 공동주택 재 건축 정비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61	23	-	38	- 법령개정에 따른 정책효과 검토 용역('24. 6.) 및 -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용역('24. 3.) 준공기한 미도래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시설비)	130	-	-	105	-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4. 6.)

□ 주거정비과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이월사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 계			-	245	
주택사업 특별회계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사무관리비)	403	304	-	16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공모 신청구역 실태조사 및 자료집 기획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4. 3.)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187	152	-	34	- e-정비사업 아카데미 콘텐츠 제작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4. 9.)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시설비)	400	195	-	195	-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4. 하반기)

□ 주택정책지원센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이월사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 계			-	1,292	
일반회계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955	599	-	338	- 서울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3단 계 구축 및 감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4. 5.)
주택사업 특별회계	서울시 주택시장 모 니터링단 조사 (사무관리비)	100	89	-	10	-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4. 3.)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사무관리비)	2,101	1,426	-	675	- 주거실태조사 용역 준공기한 미 도래(’24. 3.)
	서울시 주택시장 동향 조사 및 분석 (사무관리비)	191	164	-	27	- 주택시장 동향 조사 및 분석 용 역 준공기한 미도래(’24. 5.)
	서울시 주거안전 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연구용역비)	300	145	-	147	- 주거안전 관리종합계획 수립 용 역 준공기한 미도래(’24. 3.)
	전월세 물량예측 시 스템 개발 및 운영 (사무관리비)	200	105	-	95	- 전월세 물량예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4. 상반기)

□ 건축기획과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이월사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 계			-	533	
일반회계	의회청사 건립 등 타당성조사 용역(시설비)	680	-	-	461	- 의회청사 건립 등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4. 3.)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재정비사업 (시설비)	375	300	-	72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재정비사업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4. 2.)

□ 재정비촉진사업과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이월사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 계			-	136	
주택사업 특별회계	재정비촉진계획수 립(변경)비용 지원 (시설비)	200	148	-	49	-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정책 검토 및 존치지역 관리방안 마련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4. 5.)
	도림천 제2지류 하 천조성공사 (시설비)	165	73	-	87	- 도림천 제2지류 하천조성공사 타당 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 공기한 미도래('24. 상반기)

□ 주거환경개선과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이월사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 계			-	1,387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거재생사업 관리 (시설비)	20	-	-	19	-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시설공사비 이월('24년 3월 준공)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사무관리비)	112	45	-	27	-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 및 현장조사를 위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4년 6월 예정)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시설비)	5,499	4,049	-	1,168	- 은평구 수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 용 역 준공기한 미도래 ('24년 10월 예정)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 환경개선사업(시설비)	2,130	1,219	-	26	- 윤씨가옥 리모델링 실시실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4년 8월 예정)
	안심 집수리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939	760	-	141	- 집수리 아카데미 실습교육용역 준공기한 미 도래('24년 8월 예정)
	안심 집수리사업 활성화 (시설비)	43	10	-	6	- 강서구 화곡동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4년 6월 예정)

□ 한옥정책과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이월사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 계			-	958	
일반회계	한옥지원센터 운영 및 한옥살이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480	420	-	37	- 한옥 유지관리 매뉴얼 제작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4. 5.)
	역사가옥 사무민간위탁 지원 (사무관리비)	163	107	-	54	- 한옥 파빌리온 관리 운영 및 도보지도 2종 제작 용역 준 공기한 미도래('24. 3.)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설비)	337	309	-	28	- 1차 교통영향평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4. 8.)
주택사업 특별회계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398	175	-	119	- 경복궁 서측 경관개선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설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4. 9.)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시설비)	1,228	872	-	309	- '23년 하반기 경복궁 서측 목 조주택 흰개미 피해진단 용 역 준공기한 미도래('24. 2.)
	북촌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시설비)	500	422	-	56	- 북촌로12길 비한옥담장 개선 공사 용역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이월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및 도 시개발사업 추진용역 (시설비)	485	130	-	355	- 장기계속사업으로 1차년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4. 4.)

붙임2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 사업별 집행률('24.6.기준)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지출잔액	집행률
주택정책과	기본경비	합계	600,003	211,130	211,130	388,873	35.2%
		사무관리비	201,725	100,865	100,865	100,860	50.0%
		공공운영비	6,278	6,278	6,278	-	100.0%
		국내여비	296,940	56,253	56,253	240,687	18.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4,000	7,004	7,004	6,996	5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60	4,530	4,530	4,530	50.0%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2,000	36,200	34,000	35,800	47.2%
주택정책과	신혼부부 청년 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합계	115,603,328	31,026,878	31,026,349	84,576,979	26.8%
		사무관리비	20,000	10,000	10,000	10,000	50.0%
		사회보장적수혜금	700,000	-	-	700,000	-
		이차보전금	114,883,328	31,016,878	31,016,349	83,866,979	27.0%
주택정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합계	12,000,000	10,033,532	10,035,932	1,964,068	83.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00	49,134	49,134	250,866	16.4%
		사회보장적수혜금	11,700,000	9,984,398	9,986,798	1,713,202	85.4%
전략주택 공급과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합계	16,541,000	7,082,500	7,082,500	9,458,500	42.8%
		공사·공단자본대출금	11,580,000	5,347,500	5,347,500	6,232,500	46.2%
		출자금	4,961,000	1,735,000	1,735,000	3,226,000	35.0%
공공주택과	공공주택통합심의위 원회 운영	합계	20,262	20,262	15,260	4,998	75.3%
		사무관리비	15,260	15,260	15,260	-	1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5,002	5,002	4,998	50.0%
공공주택과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 등 매입	합계	29,393,991	7,808,612	7,564,891	21,829,100	25.7%
		자산및물품취득비	29,393,991	7,808,612	7,564,891	21,829,100	25.7%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지출잔액	집행률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호)	합계	3,461,116	1,062,670	131,875	3,329,241	3.8%
		사무관리비	10,000	7,300	7,300	2,700	73.0%
		시설비	1,055,370	1,055,370	124,575	930,795	11.8%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445,945	-	-	1,445,945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949,801	-	-	949,801	-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합계	36,168,021	-	-	36,168,021	-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0,773,545	-	-	20,773,545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5,394,476	-	-	15,394,476	-
공공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합계	144,000	-	-	144,000	-
		사무관리비	144,000	-	-	144,000	-
주거정비과	추진위/조합 공공 지원	합계	500,000	500,000	500,000	-	1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	500,000	500,000	-	100.0%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분석진단 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합계	287,045	124,429	67,739	219,306	23.6%
		사무관리비	287,045	124,429	67,739	219,306	23.6%
건축기획과	기본경비	합계	74,403	37,288	37,288	37,115	50.1%
		사무관리비	56,223	28,198	28,198	28,025	5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600	6,300	6,300	6,300	5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80	2,790	2,790	2,790	50.0%
재정비축진 사업과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합계	1,682,000	1,019,498	-	1,682,000	-
		시설비	1,540,000	1,019,498	-	1,540,000	-
		감리비	142,000	-	-	142,000	-
주거환경 개선과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합계	449,730	107,184	80,509	297,151	17.9%
		사무관리비	6,000	3,253	3,253	2,000	54.2%
		공공운영비	2,000	131	131	1,650	6.6%
		시설비	441,730	77,125	77,125	293,501	17.5%

붙임3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개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개요

※출처: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보도자료(2024.6.11.)

□ 사업내용

- ① (건축계획)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 용적률 계획 및 종상향 등을 고려한 최적의 건축계획(안) 제시
- ② (사업성분석) 감정평가사가 종전·종후자산가치 평가, 사업비 산출에 따른 수익률 예측으로 추정 분담금 산출

□ 신청요건

- (신청대상)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에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10%* 이상인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을 만족하는 주택단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

◆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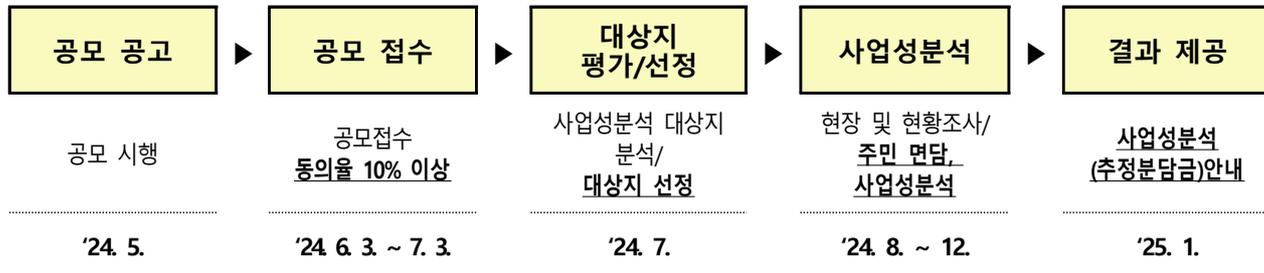
-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2)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
- 3) 기존주택의 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 주택단지란?

- 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2)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지역

□ 공모일정



□ 대상지 선정기준

- (선정기준) 공공성 충족요건에 대한 주민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사업 실행 가능 여부, 자치구 종합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 (신청서류 검토) 사업요건, 노후도 등 객관적 지표 계량화 평가
- (선정위원회 심사) 공모신청서 및 자치구 종합의견 등을 고려하여 심사, 대상지 선정 여부 최종 결정
- (결과활용) 항목별 검토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① 조합설립 이전 공모대상

구 분 (가중치 %)	평가항목	세부항목
주민 참여의지 (60)	주민동의율	① 신청자격 이상의 주민동의율(60) ▶ 50% 이상: 60 / 50~30%: 40 / 30~10%: 20
주거환경 개선기여 (40)	주택노후도	① 법정요건(60%) 이상의 주택 노후도(40) ▶ 40년 이상: 30 / 40~35년: 20 / 35~30년: 10 ※ 건축물별로 노후도가 다를 경우, 연면적 대비 노후평균 산정
가 점 (20)	-	① 인접단지 통합개발(10) ② 안전우려등급(D, E) 판정 시 가점(10)

② 조합설립 이후 공모대상(설계자 미선정 사업지)

구 분 (가중치 %)	평가항목	세부항목
주민 참여의지 (60)	주민동의율	① 신청자격 이상의 주민동의율(60) ▶ 50% 이상: 60 / 50~30%: 40 / 30~10%: 20
조합설립 이후 경과년수 (40)	사업지연율	① 조합설립 이후 경과년수(40) ▶ 조합설립 후 건축심의 미신청 구역 4년 초과: 40 / 2~4년: 30 / 2년 미만: 20
가 점 (20)	-	① 인접단지 통합개발(10) ② 안전우려등급(D, E) 판정 시 가점(10)

※ 선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대상지 선정기준은 변경 가능

붙임4

결산검사위원 시정권고사항(9건) 및 조치계획

연 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 치 계 획	소 관 실 국 (부서명)
2	적정한 국내여비 편성과 집행	<p>기본경비는 전례답습 및 점증주의 예산편성방식을 지양하고 과년도 집행실태 등을 분석하여 실집행이 가능한 예산액만 편성하도록 해야하는 바, 국내여비의 경우 단가×인원수라는 기계적 적용보다는 담당부서의 업무성격상 출장의 필요성과 빈도등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함.</p> <p>예산편성 시 시스템상 1인당 단가는 1,400천원으로 고정되어 있음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인원을, 실제 소요 예상액 추정을 위해서 정원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국내여비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시정권고 함.</p>	<p>그간 국내여비는 기준단가('23년 1,400천원)에 기관 정원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불요불급한 출장은 자제하는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높은 불용률을 기록하였음.('21년 69%, '22년 78%, '23년 80%)</p> <p>금년도 예산은 최근 3개년 집행률을 감안하여 기준단가에 조정지수 0.7을 곱하여 편성하였으며, 과다 불용 예상 시 하반기 중 예산변경 및 전용 등을 통해 불용액 최소화하고자 함.</p> <p>향후 예산편성 시에도 실제 소요 예상액을 면밀히 추정하여 불용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음.</p>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52	주택임대료 보조 금지급 사업 재설계 필요	<p>임차인의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중개비 등의 이주와 관련 있는 바우처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것이 보조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며,</p> <p>아울러 또 다른 주거약자의</p>	<p>반지하라는 열악한 주거형태를 없애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반지하 주택 매입 및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을 적극 추진</p>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

연 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 치 계 획	소 관 실 국 (부서명)
		<p>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반지하 주택의 수를 줄여나가야 하므로 반지하 주택의 적극적인 매입 등,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p>	<p>하고 있음.</p> <p>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통해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p>	
53	<p>용역비 편성 시 회계연도 중 집행가능한 규모만 편성 필요</p>	<p>용역비를 편성할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 사전절차 등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여 회계연도 중 실제 집행가능한 소요예산만을 편성하고,</p> <p>의회에 제출하는 사업별설명서에도 예산확보를 우선시하여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기보다는 주택정책실이 면밀히 산정한 사업추진일정과 예산집행계획을 사실 그대로 기재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함.</p>	<p>'23년 주택정책실에서 발주한 용역 중 33건(전체의 약 33%)이 연내 미준공으로 인해 사고이월 처리됨.</p> <p>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p> <p>향후 용역사업 추진 시 가급적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발주시기 및 용역 특성 등으로 인해 2개년 이상에 걸쳐 추진될 경우 연차별 소요에 따라 개별 연도에 예산 편성토록 하겠음.</p>	<p>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p>
54	<p>홍건익가옥 사무 민간위탁 운영관리 개선</p>	<p>민간위탁사업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만약, 중도에 계약 해지될 경우에도 불필요한 예산전용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p> <p>또한, 민간위탁사무에 하자가</p>	<p>민간위탁 통합회계 감사 결과(부적절한 회계관리)로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이 중도해지됨에 따라 홍건익가옥 운영·관리사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용이었으나, 앞으로 사업진행시 반복적인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겠음.</p>	<p>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p>

연 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 치 계 획	소 관 실 국 (부서명)
		<p>발생하여 기존 위탁업체와 중간 해지할 경우에는 당초의 80% 이상 고용승계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p>	<p>홍건익가옥의 고용승계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명시된 고용승계 원칙에 따라 이뤄진 사안임.</p> <p>다만, 중도해지된 수탁기관의 근로자 고용승계로 인해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간위탁 사무운영에 대한 관리 및 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음.</p>	
55	<p>성인지 예산관련 성별영향평가사 업 성과지표 설 정의 실효성 점 검과 증대 필요</p>	<p>성인지사업의 성과지표와 지표설정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향후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성과지표설정의 실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p> <p>정비사업 관련 분야에서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향후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가 필요함.</p> <p>사업수혜자의 성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특정 성별 비중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성비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필요함.</p> <p>현재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의 선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하고 제도의 목</p>	<p>성인지예산 편성 시 사업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및 지표설정 근거를 제시하겠음.</p> <p>정비사업 관련 분야에서는 여성 민간전문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여성의 참여도가 높은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성별 격차를 해소할 계획임.</p> <p>한편,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여성의 비중이 6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남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수혜자의 성비를 균등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p> <p>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제도가 실효성</p>	<p>주택정책실 (전략주택 공급과) (주거정비과)</p>

연 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 치 계 획	소 관 실 국 (부서명)
		적 및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 및 발굴할 것을 권고함.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	상생주택 불용률 개선	사업계획 수립 시 좀 더 종합적인 타당성 사전검토 강화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미집행액 및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과 감추경 활용 등을 통해 예산배분의 왜곡 및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장기간 토지 임차 등 한계 극복 및 사업구조 다양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개선방안을 토대로 조례 및 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 등을 통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 (전략주택 공급과)
57	안심 집수리 관련 사업 집행부진 해소 및 실효성 증대	안심 집수리 관련 보조사업, 용자사업, 이자사업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들 사업예산의 집행을 제고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보조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리고 안심 집수리 관련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범위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 만큼 이자사업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이관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용자사업, 이자사업이 상호 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하겠음. 추가적으로 보조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성능개선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택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자사업 예산편성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이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 (주거환경 개선과)

연 번	시 정 권 고 사 항	내 용	조 치 계 획	소 관 실 국 (부 서 명)
58	특별회계 목적에 따른 사업수행 검토	현재 북촌 한옥역사관 기획 및 조성 사업은 도시개발특별 회계로 편성하여 운영 중이나, 한옥 건축자산 보전진흥 및 공 공한옥 관리운영 등의 사업 성 격을 고려하여 주택사업특별회 계 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됨.	당초 <북촌 한옥역사관 기획 및 조성>은 북촌 도시재생활성 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 나, 한옥역사관 조성 완료 이후 현재는 공공한옥 관리운영 사업 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향후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하겠음.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59	공동주택 품질점 검단 운영 사업 의 사무관리비 집행부진 해소를 위한 세부사업 조정	사업의 특성상 2년간 집행률 이 저조한 공동주택 품질점검 단 운영 사무관리비는 공동주 택관리지원 사업 등 유사한 세 부사업의 사무관리비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함.	2025년 예산편성 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 유사한 세부 사업 사무관리비와의 통합 운영을 고 려하여 예산안 편성하겠음.	주택정책실 (공동주택 지원과)